

# 臺諫 啓辭에 대한 考察

李康旭\*

- |                |               |
|----------------|---------------|
| I. 머리말         | 3. 處置 啓辭      |
| II. 臺諫 啓辭의 작성  | 4. 下諭 啓辭      |
| 1. 草本의 작성      |               |
| 2. 正本의 작성      | IV. 臺諫 啓辭의 전달 |
| III. 臺諫 啓辭의 분류 | 1. 詣臺 傳啓      |
| 1. 論劾 啓辭       | 2. 入侍 傳啓      |
| 2. 避嫌 啓辭       | V. 맺음말        |

## <국문 요약>

臺諫 啓辭는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국왕에게 올리는 啓辭를 가리킨다. □승정원일기□에는 거의 매일같이 臺諫 啓辭가 기록되어 있고, 현재 문서로 남아있는 대간 계사는 초본과 정본이 일부 있다. 본고에서는 현재 문서로 남아 있는 대간 계사와 □승정원일기□에 기록된 대간 계사를 중심으로, 대간 계사의 작성, 대간 계사의 분류, 대간 계사의 전달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臺諫 啓辭는 草本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正本을 작성하여 국왕에게 올렸다. 대간 계사의 초본은 臺諫 중에서도 문서의 출납을 담당하는 城上所가 初草本을 먼저 작성하여 동료 대간들과의 합의를 거친 뒤에 正草本을 작성하였다. 작성이 완료된 대간 계사의 초본은 城上所가 承旨와 注書에게 臺廳으로 나오도록 청하여 전달하였다.

대간 계사의 정본은 대간으로부터 초본을 전달받은 주서가 승정원에서 작성하였다. 다만 대간 계사의 내용이 승지와 관련이 있어서 승지가 臺廳에 나아갈 수 없는 경우에는 주서만 臺廳에 나아가되, 정본은 대간이 대청에서 직접 작성하여 承傳色에게 전달하였다. 그 외에 兩司나 三司의 습啓는 주서가 臺廳에서 정본을 작성하였고, 三司의 伏閣啓辭는 승지가 작성하였다. 대간 계사의 정본이 작성되면 사헌부의 啓辭와 사간원의 啓辭는 申時까지, 兩司의 습啓와 三司의 습啓는 3更까지 승전색을 통해 入啓하였다.

대간 계사는 그 내용에 따라 論劾啓辭, 避嫌啓辭, 處置啓辭, 下諭啓辭로 나눌 수가 있다. 論劾啓辭란 대간이 국왕의 시책에 대해 諫諍하거나 관원의 처신에 대해 彈劾하는 내용의 계

\* 한국고전번역원 수석전문위원(sojeong11@itkc.or.kr)

사를 가리킨다. 論劾啓辭는 사헌부나 사간원이 단독으로 올리는 獨啓와 兩司나 三司가 합동으로 올리는 合啓로 나눌 수가 있고, 새로운 사안으로 올리는 新啓와 이전에 올린 사안을 계속해서 올리는 前啓 또는 舊啓로 나눌 수가 있다. 論劾啓辭를 올리기 시작할 때에는 동료 臺諫들에게 簡通을 보내 동의를 구하여 서로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 發啓하였고, 한번 發啓한 論劾啓辭는 국왕의 윤허를 받지 못하면 連啓할지 停啓할지를 대간들의 합의로 정해야 하였다.

避嫌啓辭란 대간이 다른 관원의 탄핵을 받았거나 국왕의 질책을 받았을 경우에 대간의 직무를 맡을 수 없다며 遞差해주기를 청하는 내용으로 올리는 계사를 가리킨다. 대간들은 避嫌해야 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 避嫌啓辭를 올려 자신이 대간의 직무를 계속 수행해도 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公論에 의한 심판을 받은 뒤에 거취를 정하였다.

處置啓辭란 避嫌한 대간에 대해 정당성 여부를 판정하여 出仕하도록 청하거나 遞差하도록 청하는 내용으로 올리는 계사를 가리킨다. 處置는 정상적으로 공무를 행하는 대간이나 玉堂이 대간의 피혐계사에 근거해서 행하였다. 避嫌한 대간에 대해 出仕시킬 것을 청하는 處置啓辭를 올려 국왕의 허락을 받고 나면, 승정원이 해당 피혐한 대간을 牌招한 뒤에 승지가 臺廳에 나아가서 해당 대간에게 就職하도록 통보하였다.

下諭啓辭란 지방에 있는 대간에게 속히 올라오도록 下諭할 것을 청하는 啓辭를 가리킨다. 새로 제수된 대간이 지방에 있거나 휴가를 받아 지방에 내려갔거나 왕명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에 내려간 대간에게 속히 올라오라고 지시할 때에는 兩司에서 啓辭를 올려 국왕의 허락을 받은 뒤에 이들에게 속히 올라오라고 下諭하였다. 지방에 있는 대간에게 下諭할 때에는 승정원에서 그 내용을 有旨로 작성하여 내려 보냈다.

兩司는 각각 매일 傳啓할 의무가 있었는데, 양사가 전계하는 방식은 詣臺傳啓와 入侍傳啓로 나눌 수가 있다. 詣臺 傳啓란 양사의 대간이 靑 안의 臺廳에 나아가서 대간 계사를 국왕에게 올리기 위해 승지와 주서 및 승전색에게 전하는 것을 가리키며, 臺廳 傳啓라고도 하였다. 예대 전계는 국왕이 재계하는 기간이나 國恤 기간 등 視事하지 않는 시기를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국무를 수행하는 때에 매일 臺廳에서 행하였다. 다만 대간이 入侍할 일이 있을 경우에는 入侍하여 傳啓하였다.

入侍 傳啓는 君臣의 모임이 있어서 대간들도 함께 입시할 경우에 대간 계사를 榻前에서 국왕에게 직접 읽어 전하는 것을 가리키며, 榻前 傳啓라고도 하였다. 입시 전계는 국왕이 大臣과 備局堂上을 引見하는 次對, 君臣이 모여 經傳 등을 강론하는 經筵과 召對 등을 행할 때에 행하였으며, 그 외에도 신하가 正殿의 정문에서 국왕에게 四拜禮를 행하는 朝參이 거행되거나 국왕의 명이 있을 경우에는 대간이 입시하여 전계하였다. 입시 전계를 행할 때에는 대간 계사를 笏記에 적어서 이를 보고 아뢰되, 笏記를 노출시키거나 펴놓고 읽는 것은 물론이고 흘기를 서로 주고받는 행위도 금지하였다.

주제어 : 論劾啓辭 / 避嫌啓辭 / 處置啓辭 / 下諭啓辭 / 詣臺傳啓 / 入侍傳啓

## I. 머리말

臺諫은 司憲府와 司諫院의 관원을 아울러 이르는 칭호이다. 다만 사헌부의 관원 중 監察은 일반적으로 대간에 포함시키지 않고 臺監이라 하여 대간과 구별하였다.<sup>1)</sup> 대간은 국왕에 대한 諫諍과 관원에 대한 彈劾 등 言官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sup>2)</sup> 이들 대간이 言官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으로는 말로 하는 방법과 글로 하는 방법이 있었다.<sup>3)</sup> 조선 후기에 와서는 그중 말보다는 글의 비중이 높았다고 할 수 있다.<sup>4)</sup>

啓辭는 ‘신하가 임금에게 아뢰는 말이나 내용’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로도 사용되었고, 中央衙門에서 국왕에게 올리는 문서의 의미로도 사용되었다.<sup>5)</sup> 그중 문서로서의 啓辭는 衙門의 首長이 承政院의 兒房으로 직접 나아가서 올리는 兒房啓辭와 衙門의 首長이 승정원의 兒房으로 나아가지 않고 해당 衙門에서 承旨와 承傳色을 청하여 올리는 非兒房啓辭로 나누어진다.<sup>6)</sup>

臺諫 啓辭는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국왕에게 올리는 啓辭를 가리키는 것으로, 非兒房啓辭의 일종이다.<sup>7)</sup> □승정원일기□에서는 臺諫 啓辭를 ‘臺諫啓辭’보다는 ‘臺啓’라고 표현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sup>8)</sup> 그리고 □승정원일기□에는 사헌부의 啓辭를 ‘府啓’, 사간원의 啓辭를 ‘院啓’라고 기록하기도 하고 啓辭를 올리는 관원의 이름으로 기록하기도 하였으며, 그 외에도 ‘新啓’나 ‘前啓’, ‘승啓’ 등 다양한 이름으로 기록하였으므로 실제 臺諫 啓辭를 수량화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승정원일기□에는 거의 매일같이 臺諫 啓辭가 기록되어 있다. 이는 매일 啓辭를 올리는 것이 대간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어서 국왕의 재가를 받은 대간 계사를 승정원에서 □승정원일기□에 거의 날마다 수록하여 남겼기 때문일 것이다.<sup>9)</sup> □승정원일기□에 기록된 대간 계사를 살펴보면, 대간 계사를 작성하고 전달하는데 일정한 규정이 있으며 그 내용도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동안 대간에 대한 연구는 여러 방면으로 이루어졌

- 1) □승정원일기□ 영조 31년 1월 25일, “臺監諸員合坐呈課於其時臺諫, 則臺諫拘於顏情, 付之火中.”; □승정원일기□ 정조 원년 3월 8일, “司憲府監察李義星, 身爲臺監, 以下吏之事, 突入捕廳.”; □성종실록□ 3년 7월 7일(임인), “司憲府, 自大司憲至持平, 稱臺長, 而監察不與焉. 司諫院, 自大司諫至正言, 皆稱臺長.” □성종실록□에서는 臺諫이라는 말 대신 臺長이라는 말을 써서 監察과 구별하였다.
- 2) □經國大典□에서 사헌부는 ‘論執時政’과 ‘糾察百官’ 등의 일을 관장하는 관사로, 사간원은 ‘諫諍’과 ‘論駁’을 관장하는 관사로 규정하였다. □經國大典□ 吏典 京官職 司憲府. 司諫院.
- 3) 최승희는 조선 초기의 대간이 言官으로서 言論하는 방법을 말과 글 두 가지로 나누고, 그중 말로 하는 방법으로는 국왕과 대면하여 진술하는 것이 있고, 글로 하는 방법으로는 上疏. 上書. 劄子. 封章 등이 있다고 하였다. 목정균은 조선시대 制度 言論의 전달 수단을 직접 전달 수단과 간접 전달 수단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구두 전달과 문자 전달로 나누어서 서술하였다. 최승희, □朝鮮初期 言官. 言論研究□(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33쪽; 목정균, □朝鮮前期 制度 言論研究□(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5), 151~164쪽 참조.
- 4) 조선 후기 대간의 언론 활동은 주로 傳啓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傳啓는 대간이 臺廳에 나가서 啓辭를 전달하는 방법과 입시하여 榻前에서 啓辭를 전달하는 방법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 5) 啓辭의 의미 및 유래에 대해서는 필자의 논문 「啓辭에 대한 考察-□承政院日記□를 중심으로-」, 한국고문서학회, □고문서연구□ 37집(2010), 128~132쪽 참조.
- 6) 啓辭를 兒房啓辭와 非兒房啓辭로 분류한 것은 필자의 앞 논문 129~131쪽 참조.
- 7) 臺諫 啓辭를 非兒房啓辭로 분류한 것은 필자의 앞 논문 144~147쪽 참조.
- 8)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승정원일기□(<http://sjw.history.go.kr>)를 검색한 결과 ‘臺諫啓辭’는 220건이고 ‘臺啓’는 6313건이었다. 검색일 : 2014년 2월 8일.
- 9) □銀臺便攷□ 刑房攷 臺諫, “兩司每日詣臺傳啓, 而若不詣臺, 則以合辭闕啓, 每日請牌, 一司臺諫俱有故而只有一司, 無以合啓, 則監察代行茶時.”; □銀臺條例□ 刑攷 臺諫, “兩司每日待開門詣臺, 傳合啓及府、院前啓, 又與玉堂傳三司合啓, 【過三更, 不得傳. ○ 大臣及國舅、宗親、儀賓、山林聲討, 三司聯啓.】 一司詣臺時, 只傳該司前啓. 【過末時, 不得傳.】”

으나, 대간 기사 자체를 연구하거나 대간 기사를 통한 대간의 역할 등에 대한 연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sup>10)</sup> 따라서 본고에서는 대간 기사를 작성하고 전달하는 규정을 밝히고 그 내용을 분류해보려고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문서의 일종으로서 대간 기사의 특징을 밝히는 일뿐만 아니라 대간 기사를 통해 행해진 言官으로서 兩司 대간의 역할을 밝히는 데도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현재 문서로 남아있는 대간 기사는 대부분 초본이며, 일부 정본이 남아 있다.<sup>11)</sup>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재 남아 있는 문서와 □승정원일기□에 기록된 대간 기사를 중심으로, 대간 기사의 작성, 대간 기사의 분류, 대간 기사의 전달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한다. 대간 기사의 작성에서는 대간 기사의 草本을 작성하는 단계와 正本을 작성하는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대간 기사의 분류에서는 대간 기사를 論劾啓辭, 避嫌啓辭, 處置啓辭, 下諭啓辭 등 4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볼 것이다. 대간 기사의 전달에서는 대간이 臺廳에 나아가서 啓辭를 전달하는 방식과 입시하여 榻前에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 II. 臺諫 啓辭의 작성

대간 기사를 문서로 작성하여 올리기 시작한 시기는 종종 때부터인 것으로 보인다.<sup>12)</sup> 여기에서는 대간 기사의 초본을 작성하는 과정과 정본을 작성하는 과정으로 나누어 대간 기사의 작성 절차와 문서 형식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1. 草本의 작성

대간 기사의 정본을 작성하기에 앞서 초본을 작성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도 종종 때부터 보이기 시작한다.<sup>13)</sup> 먼저 □승정원일기□의 기록을 통해 대간 기사의 작성 절차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 10) 그동안 조선시대의 臺諫 制度에 대한 연구로는 정두희, □朝鮮時代 臺諫研究□(일조각, 1994); 이흥렬, 「臺諫制度의 法制史的考察-近朝鮮初期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구 역사학연구회), □사총□ 5권(1960); 백상기, 「조선조 감사제도 연구 : 조선시대의 감사제도 ; 조선조 臺諫 및 暗行御史制度」,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민족문화연구총서□ 14권(1990) 등이 있고, 言官으로서 대간의 역할에 대한 연구로는 목정균, □朝鮮前期 制度言論研究□(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5); 최승희, □朝鮮初期 言官.言論研究□(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정두희, 「朝鮮 成宗代 臺諫의 彈劾活動」, 역사학회, □역사학보□ 109권(1986); 김영주, 「조선왕조 초기 公論과 공론형성과정 연구 : 諫諍·公論·公論收斂制度의 개념과 종류, 특성」, 한국지역언론학회, □언론과학연구□ 2권(2002); 송용섭, 「성종대 대간피험(臺諫避嫌)의 증가와 그 의미」, 조선시대사학회, □조선시대사학보□ 62권(2012) 등이 있으며, 권력 기관으로서 兩司의 위상에 대한 연구로는 정두희, 「臺諫의 活動을 통해 본 世祖代의 王權과 儒敎理念의 對立」, 역사학회, □역사학보□ 130권(1991); 정홍준, 「17세기 대신과 臺諫의 역할관계」,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구 역사학연구회), □사총□ 42권(1993); 박창진, 「中宗實錄을 통해서 본 정책참여 기관의 권력관계연구-국왕, 의정부, 육조, 승정원, 홍문관, 사헌부, 사간원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31권 2호(1997) 등이 있다.
- 11)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이 소장하고 있는 대간 기사는 啓文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모두 초본이다. 그리고 한국국학진흥원이 소장하고 있는 傳敎軸 안에 대간 기사의 정본이 일부 보인다. 傳敎軸에 대해서는 명경일의 「정조대 傳敎軸을 통해 본 □承政院日記□의 문서 謄錄 체계」, 한국고문서학회, □고문서연구□ 제44호(2014), 77~115쪽 참조.
- 12) 필자, 앞의 논문 129~131쪽 참조.
- 13) 대간 기사의 초본은 實錄과 □승정원일기□에 대부분 ‘啓草’라고 기록되어 있다.

대체로 대간 계사를 전하는 규례로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臺官이 臺廳에 들어가면, 사헌부의 下吏들이 좌우에 늘어서서 文房具를 올리기도 하고 舊啓를 바치기도 하며, 啓辭 한 장을 베끼기를 기다렸다가 두 명의 下吏가 그때마다 즉시 원본과 대조를 합니다. 만일 新啓가 있으면 또 下吏들에게 종이를 잘라서 올리도록 합니다. 啓辭를 모두 쓰고 나서는 新啓와 舊啓를 합치고, 下吏에게 그 숫자를 세어 각 啓辭의 紙面에 작은 글씨로 번호를 써넣도록 합니다. 그런 뒤에 마침내 承旨와 史官에게 臺廳으로 나오도록 청하여 만나서 전해주면 承旨와 史官이 이를 받아가지고 승정원으로 돌아가서 하나둘씩 베껴서 주상께 들입니다. 이것이 실로 300년 동안 전해 내려오는 옛 규례입니다.<sup>14)</sup>

위의 내용을 중심으로 대간 계사의 초본을 작성하는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간 계사의 초본을 작성하는 사람은 대간이다. 대간 중에서도 城上所가 대간 계사의 초본을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sup>15)</sup> 성상소는 양사의 대간 중에서 문서의 출납을 담당하는 대간을 가리키는 말로, 양사에서 각각 가장 하위 대간 1명씩에게 담당하도록 하였고, 성상소를 담당해야 할 대간이 사정이 있어 공무를 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대간보다 바로 위의 대간이 대신 성상소를 담당하였다.<sup>16)</sup> 대간 계사 중 避嫌啓辭의 초본은 避嫌하는 대간 자신이 직접 초본을 작성하였다.<sup>17)</sup> 대간이 入侍하여 傳啓한 경우에는 입시한 자리에서 물러나온 뒤에 계사의 초본을 작성하여 승정원에 전달하였는데, 이때에도 避嫌啓辭의 초본은 해당 대간이 작성하였다.<sup>18)</sup>

둘째, 대간 계사의 초본을 작성하는 장소는 臺廳이다. 兩司의 本司나 朝房에서 초본을 작성한 사례가 일부 보이기도 하나, □승정원일기□에는 대부분 臺廳에서 작성한 것으로 나온

14) □승정원일기□ 영조 9년 2월 20일, “大抵傳啓之規, 臺官入去臺廳, 則府吏羅列左右, 或進文房, 或納舊啓, 俟其騰出一丈, 兩吏隨即考準。如有新啓, 則又令裁紙以進。書畢後, 合新舊啓, 使吏計其數, 以細字填其一二於各啓紙面。遂請承史, 當面傳授, 則承史受歸本院, 一二騰入。此實三百年流來古規。”

15) □중종실록□에 의하면 대간 계사에는 반드시 작성자인 城上所의 이름을 쓰도록 하였다. □중종실록□ 21년 1월 2일, “傳曰: 臺諫所啓, 其書城上所之名, 可也。【注書草草, 只書啓辭, 不書臺諫之名, 故有是教。】”; □승정원일기□ 숙종 1년 12월 6일, “凡臺閣啓辭, 城上所來詣臺廳, 親自書傳。故雖連啓啓辭, 不得仍傳前草, 必日日改書, 而且一張紙, 不得聯書兩件事, 例也。” □중종실록□과 □명종실록□에 兩司의 長官, 또는 承政院의 주서가 대간 계사를 ‘起草’한다는 내용이 일부 보이기도 하나, 조선 후기에 와서는 이것이 일반적인 관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종실록□ 19년 10월 29일(경신), “臺諫所啓, 予只見啓草而發落也。前諫院所啓, 不載於啓草, 而記於翰林草冊云。臺諫所啓, 承旨聞而注書起草, 然後承旨復磨勘而啓, 例也, 落書, 不可也, 增加, 亦不可也。”; □명종실록□ 6년 11월 9일(계사), “常時啓事, 臺諫議合, 然後爲之, 而長官例爲起草。… 常時啓事, 無小大必議于同僚, 而長官起草, 例也; 若長官不坐, 則次官代之, 常也。”

16) 城上所는 원래 景福宮 정문의 동서 담장 위에 설치된 건물로, 양사의 문서 출납을 관장하는 대간이 계사를 전달한 뒤에 임금의 비답이 내릴 때까지 성상소에서 기다리기 때문에 이들을 성상소라고 부르게 된 것이라고 한다. 사헌부의 경우 봄과 여름에는 持平이 성상소를 맡고 가을과 겨울에는 掌令이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景福宮誌□, “城上所, 在光化門左右宮城東西兩角, 卽祖宗朝臺諫會議發啓處也。邇來廢閣久矣, 朝紙中, 稱以城上所日暮姑停爲言者, 此也。”; □중종실록□ 2년 11월 19일(무오), “兩司各以一員出納公事者, 謂之城上所, 如他司掌務之任也。”; □선조수정실록□ 16년 6월 1일(신해), “兩司草啓, 惟一員詣闕進啓者, 謂之城上所者, 以雖夜深閉門, 仍在城上待批答, 故有此號。”; □효종실록□ 1년 3월 1일(갑인), “祖宗朝設廳於宮城上, 使兩司各一員隨事入來, 仍傳啓辭, 故謂之城上所。”; □승정원일기□ 숙종 29년 11월 4일, “本府城上所之任, 自下達上, 春夏則持平當之, 秋冬則掌令當之。”

17) □승정원일기□ 인조 9년 윤11월 12일, “凡臺諫啓辭, 與同僚完議構草後詣闕, 而至於自己避嫌, 則或在家起草, 至臺廳改書; 或思量措語, 至臺廳起草, 初無規例矣。”; □승정원일기□ 정조 8년 5월 26일, “昨日筵席, 憲臣之傳啓也, 金養淳事之未及承批, 而遽奏他啓之狀, 臣既參見, 及其出來臺廳, 憲臣手寫避嫌草, 送于政院。”

18) 대간이 입시하여 傳啓할 때 아뢴 내용과 추후에 작성해서 보낸 啓辭의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승지와 주서가 이를 수정해서 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기도 하였다. □승정원일기□ 현종 3년 9월 30일, 영조 11년 4월 25일.

다.19) 현종 때에 편찬된 것으로 알려진 □은대편고□와 고종 때에 편찬된 □은대조례□에서는 대간이 매일 臺廳에서 傳啓하는 것을 의무화한 것으로 볼 때에도 대간 계사의 초본을 작성하는 장소로는 주로 臺廳이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20)

셋째, 대간 계사의 초본을 작성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매일 申時가 지나기 전까지이다. 대간이 臺廳에 나아가서 未時에 傳啓하는 것이 관례였고, 신시가 지날 때까지도 傳啓하지 않고 지연시킬 경우에는 처벌을 받은 점으로 볼 때 늦어도 신시까지의 초본을 작성했을 것으로 보인다.21) 다만 습啓의 경우에는 3更까지 전계할 수 있었으므로 습啓의 초본은 3更까지는 작성했을 것으로 보인다.22)

넷째, 대간 계사의 초본을 작성하는 과정은 몇 단계로 나누어볼 수 있겠다. 대간 계사의 초본은 1차에 작성을 완료하였던 것이 아니고, 初草本을 먼저 작성하여 대간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에 최종적으로 正草本을 작성하였다.23) 初草本은 성상소가 양사의 長官이나 亞長과 상의하여 작성하고,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동료 대간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 初草本과 簡通을 동료 대간들의 집으로 보내 동의를 구하여 의견이 일치되면 正草本을 작성하였다.24) 이렇게 보면 초본을 작성하는 과정은 네 단계로 정리할 수 있겠다. 첫 번째는 대간이 傳啓할 사안을 발의하는 단계이고, 두 번째는 初草本을 작성하는 단계이며, 세 번째는 동료 대간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단계이며, 네 번째는 正草本을 작성하는 단계이다. 해당 대간이 직접 초본을 작성하는 避嫌啓辭와 지방에 있는 대간에게 下諭할 것을 의례적으로 청하는 下諭啓辭를 제외하면, 대체로 위의 단계를 거쳐 초본이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대간 계사의 초본은 성상소가 臺廳에서 승지와 주서에게 전달하였다. 위의 과정을 거쳐 작성된 대간 계사의 초본은 성상소가 외면을 봉하고 서명해서 승지와 주서에게 臺廳으로 나오도록 청하여 전달하였다.25)

이제 啓辭式과 대간 계사의 실제 초본을 통해 문서 형식을 살펴보기로 한다. 啓辭式에 대한 규정은 法典에는 보이지 않고 正祖代에 편찬된 □奎章閣志□와 憲宗代에 편찬된 □銀臺便攷□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먼저 □奎章閣志□에는 규장각이 국왕에게 올리는 계사의 작성 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19) □승정원일기□ 효종 즉위년 12월 5일, 현종 6년 9월 2일, 숙종 원년 12월 6일, 영조 49년 1월 18일.

20) □銀臺便攷□ 刑房攷 臺諫; □銀臺條例□ 刑攷 臺諫.

21) 영조의 경우에는 午時 이전에 입시할 일이 있을 경우에는 대간이 입시하여 전계하고 입시할 일이 없으면 미시 이후에 전계하도록 하였다. 그렇게 되면 예대 전계는 미시에서 신시 사이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다. □승정원일기□ 영조 51년 8월 13일, “宅鎭曰:‘然則臺諫詣臺後, 午前有入侍, 則同爲入侍傳啓; 不得入侍, 則未時後捧入乎?’ 上曰:‘依爲之.’ 命詣臺臺臣, 午前入侍傳啓, 午后臺廳傳啓事.”

22) □銀臺便攷□ 刑房攷 臺諫, “습啓, 限三更爲之, 而既爲合辭, 則府院前啓一體爲之, 府院啓, 則限申時, 申後則出日暮姑停望.”

23) 실록과 □승정원일기□에는 初草本을 ‘元啓草’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승정원일기□ 인조 4년 10월 26일, 20년 1월 1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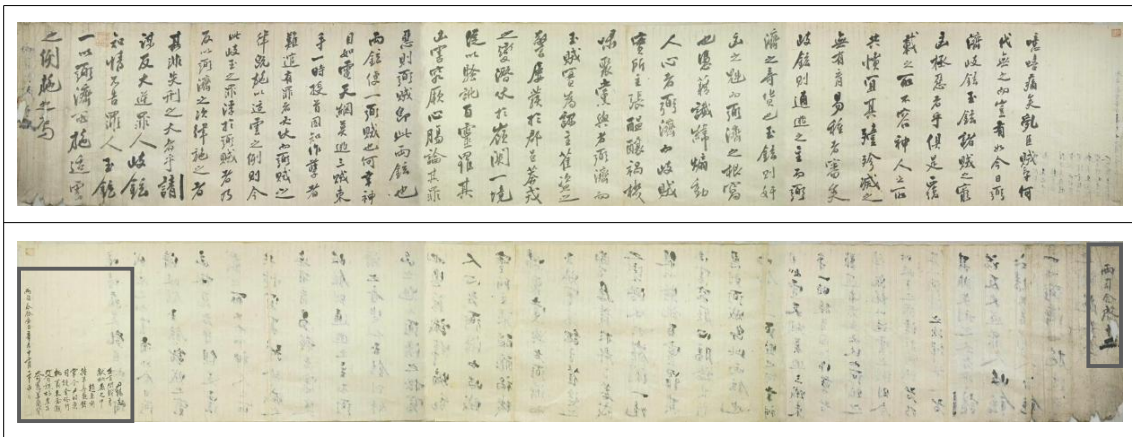
24) 성상소가 동료 대간들에게 동의를 구할 때에는 簡通을 보냈으며, 그에 대해 동료가 동의할 때에는 ‘삼가 잘 알았다’라는 뜻으로 ‘謹悉’이라고 적어서 보냈다. □선조실록□ 38년 9월 15일(병술), “凡論啓之際, 必於長官處構草. 故長官非呈告在外, 則縱有疾病、公故, 城上所亦親往而完定, 簡通於同僚. 若會坐之日, 則長官雖不來於席上, 相議裁草, 乃所以重其事, 而尊體貌也.”; □승정원일기□ 현종 3년 9월 10일, “同僚引避, 則處置之際, 城上所, 必持避嫌啓草, 就于長官, 或亞長家, 相議構草以啓者例也.”; □승정원일기□ 숙종 24년 2월 19일, “闕門垂閉之時, 答簡始到, 而右僚, 又以‘惟在諒處.’爲言. 凡臺閣之規, 必書謹悉, 然後聯名, 例也, 而雖有諒處之語, 既無謹悉二字, 則臣之率爾傳啓之失, 在所難免.”

25) □銀臺便攷□ 刑房攷 臺諫; □銀臺條例□ 刑攷 臺諫; □승정원일기□ 영조 6년 4월 23일, “昨日館洞高柱家事, 臺啓草本, 則外封着署, 而送于堂后矣. 假注書坼見後, 不封, 還送于臺廳.”

啓辭를 작성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閣臣이 직접 行草로 ‘閣臣 某가 아뢰기를, 「…」’라고 쓰고, 말미는 ‘어떻겠습니까?’나 ‘감히 아뢰입니다.’나 ‘감히 여쭙니다.’라고 쓰며, 승전색을 청하여 계사를 읽어 전해주어 入啓하도록 하는 것은 草記를 入啓하는 規례와 같다.”<sup>26)</sup>

위의 啓辭式은 奎章閣에서 국왕에게 올리는 啓辭의 문서 형식을 규정한 것이기는 하지만, 啓辭의 문서 형식이라는 큰 틀은 각 관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奎章閣志□ 이외에도 □銀臺便攷□에서는 王世子가 百官을 거느리고서 庭請할 때와 대신이 百官을 거느리고서 庭請할 때 올리는 계사의 문서 형식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서두에는 계사를 올리는 사람의 職名과 姓名 및 ‘啓曰’을 쓰고 말미는 청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하도록 하였다.<sup>27)</sup> 이상의 규정에 따라 啓辭를 작성하는 원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啓辭는 계사를 올리는 관원이 行草로 직접 작성한다. 둘째, 啓辭의 序頭는 계사를 올리는 신하가 아뢰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셋째, 啓辭의 말미는 요청하는 내용이면 ‘請’이나 ‘何如’, 보고하는 내용이면 ‘敢啓’, 묻는 내용이면 ‘敢稟’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작성한다.

다음으로 현재 남아있는 대간 계사의 초본을 살펴보도록 한다.



<그림-1> 1871년(고종 8) 臺諫 啓辭의 草本(▲전면 ▼후면)<sup>2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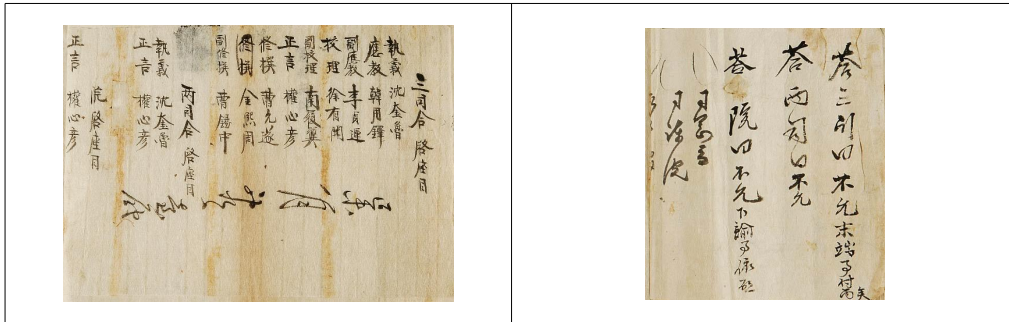
위의 <그림-1>을 비롯하여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남아있는 대간 계사

26) 初草本 □奎章閣志□ 卷2 事例 草記, “啓辭:‘閣臣以行草自書『閣臣某啓曰云云』, 結之曰何如或敢啓或敢稟, 其請承傳色, 讀傳入啓, 如草記之例。”

27) 왕세자에게 올리는 ‘啓辭’는 ‘達辭’라고 하였기 때문에 ‘啓曰’을 ‘達曰’로 바꾸어 썼다. ‘達辭’에 대해서는 조미은, 『朝鮮時代 王世子文書 研究』(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4), 196~200쪽 참조. □銀臺便攷□ 吏房攷 王世子率百官庭請, “書規:‘王世子臣諱率百官庭請啓曰云云。’ 末端, 或亟賜允從焉, 或以答羣情焉, 或以光聖德焉, 或以答顯祝之至情焉。”; □銀臺便攷□ 吏房攷 百官庭請, “書式:‘領議政臣某、領省事臣某等【只書時原任大臣姓名】率百官庭請啓曰、達曰, 云云【以二折次啓紙, 注書書之, 字樣同院議啓辭。】’ 末端, 或臣民幸甚, 或不勝顯祝, 或千萬血祝, 或勉循學國同情之請焉。”

28)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 규장각 소장 522601, 兩司合啓司憲府·司諫院啓文, 가로 320cm이고 세로 54cm이다. “[전면] ‘噫嘻痛矣! 亂臣賊子, 何代無之, 而豈有如今日彌濟、岐鉉、玉鉉諸賊之窮凶極惡者乎! 俱是覆載之所不容神人之所共憤, 宜其殄滅之無有育易種者, 審矣。… 其非失刑之大者乎! 請謀反大逆罪人岐鉉、知情不告罪人玉鉉, 一以彌濟所施適雲之例施之焉。’ [후면] 兩司合啓十二。 兩司合啓座目, 辛未十二月二十五日:‘大司憲姜爾馨、行大司諫朴孝正、執義宋奎灝、司諫金裕行、掌令尹時榮、持平奇觀鉉、趙秉弼、獻納魚允中、正言閔載吾、尹錫圭。’” 이 계사는 □승정원일기□ 고종 8년 12월 25일에 똑같이 실려 있다.

의 초본을 보면, 前面에는 시작부터 끝까지 계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後面에는 해당 계사를 올린 대간들의 명단이나 작성자의 職名과 姓, 숫자 등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글씨는 草書와 行書를 섞어 쓰고 글자를 수정한 흔적이 남아있다. <그림-1>의 前面에는 대간의 의견을 서술하는 본문과 국왕에게 요구할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請’ 자 이하의 말미로 구성되어있다.<sup>29)</sup> 後面에는 ‘兩司合啓十二’라는 기록과 함께 이 양사의 合啓에 동참한 官원들의 명단을 열거하고 연월일을 기록하였다.<sup>30)</sup> <그림-1>의 대간 계사는 문서에 기록된 날짜와 동일한 고종 8년 12월 25일의 □승정원일기□에 新啓로 실려 있는데, □승정원일기□에는 대간 계사의 서두에 ‘大司憲姜蘭馨、大司諫朴孝正、執義宋奎灝、司諫金裕行、掌令尹時榮、持平奇觀鉉·趙秉弼、獻納魚允中、正言閔載晉·尹錫圭等啓曰’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문서의 후면에 기록된 명단과 일치한다. 따라서 후면의 명단은 계사의 서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1>의 후면에 기록된 명단이 대간 계사의 서두에 해당한다는 것은 傳敎軸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 傳敎軸은 승정원이 □승정원일기□에 기록할 순서에 맞추어 座目과 文書 등을 편철한 것으로, 하루 단위로 만들어졌다.<sup>31)</sup>



<그림-2> 三司合啓 座目<sup>32)</sup>

<그림-3> 三司合啓 批答<sup>33)</sup>



<그림-4> 시기·국왕 동정·등출 기록<sup>34)</sup>

<그림-5> 無司憲府傳啓<sup>35)</sup>

29) 대간 계사의 말미는 규장각 등의 계사와 달리 ‘請’ 자로 마무리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실제로 □승정원일기□에 기록된 대간 계사의 말미는 대부분 ‘請’ 자로 마무리하였으며, ‘請’ 자로 마무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사로 인정하지 않았다. □승정원일기□ 정조 24년 2월 27일, “既不以請字結末, 則何可謂之啓辭乎? 非啓辭, 非所懷, 而如是相持, 豈成說乎?”

30) 후면의 숫자 ‘12’는 초본의 작성 과정에서 살펴보았듯이 대간 계사의 초본을 승정원에 전할 때 기록하던 啓辭의 일련번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31) 명경일, 앞의 논문 89~96쪽 참조.

32) 한국학자료센터 영남권역센터(<http://yn.ugyo.net>),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안동 하회 풍산류씨 화경당, 1799년 8월 9일자 注書 柳台佐가 편철해 놓은 傳敎軸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이다. “三司合啓座目: 執義沈奎魯、應敎韓用鐸、副應教李貞運、校理徐有聞、副校理南履翼、正言權心彥、修撰曹允遂、金熙周、副修撰曹錫中。’ 兩司合啓座目: 執義沈奎魯、正言權心彥。’ 院啓座目: 正言權心彥。’ 己未八月初九日臺廳。”

33) 한국학자료센터 영남권역센터(<http://yn.ugyo.net>),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안동 하회 풍산류씨 화경당, 1799



<그림-2>와 <그림-3>, <그림-4>, <그림-5>는 정조 23년 8월 9일의 傳敎軸에 편철된 문서로, <그림-2>는 三司의 啓에 동참한 三司 官원의 명단, 兩司의 啓에 동참한 兩司 官원의 명단, 사간원의 계사를 올린 官원의 명단이고, <그림-3>은 三司의 啓에 대한 비답, 兩司의 啓에 대한 비답, 사간원의 계사에 대한 비답이다. □승정원일기□ 정조 23년 8월 9일에는 三司의 啓, 兩司의 啓, 사간원의 계사 서두에 각각 <그림-2>의 명단과 동일하게 대간과 옥당의 職名과 姓名이 기록되어 있고, 그에 대한 비답도 각각의 계사 뒤에 <그림-3>과 동일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대간 계사의 초본 후면에 기록된 명단은 서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4>는 이날의 年號와 月日 및 국왕의 동정 등을 기록하고, 이날의 □승정원일기□에 대간 계사를 모두 베껴 기록하였음을 오른쪽 하단 여백에 메모한 것이다.<sup>36)</sup> <그림-5>는 이날 사헌부의 계사가 없음을 표시한 것으로, □승정원일기□ 정조 23년 8월 9일에는 三司의 啓와 兩司의 啓가 끝나고 사간원의 계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상 대간 계사의 문서 형식에 대한 것을 종합해보면, 서두에는 동참한 官원들의 職名과 姓名을 기록하고, 본문에는 대간들이 국왕에게 진술하는 내용을 기록하며, 말미에는 최종적으로 국왕에게 요구하는 사항을 ‘請’ 자 이하로 정리하여 기록한다고 할 수 있겠다.

## 2. 正本의 작성

대간 계사의 정본을 작성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고종대에 편찬된 □은대조례□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傳啓할 때에는 승지와 사관이 臺廳에 나가서 맞이하여 啓辭를 받아 온 뒤에 주서가 正書 하되, <新啓는 앞부분에 찌지를 붙이고, 추가하거나 말소한 곳에는 옆 부분에 찌지를 붙인다.> 낮에는 時를 써넣고 밤에는 更을 써넣어 승전색을 통해 국왕의 재가를 받기 위해 들여보내고, 비답을 내려 주면 승지와 사관이 또 臺廳에 가서 전해 준다.<sup>37)</sup>

위의 내용을 중심으로 대간 계사의 정본을 작성하는 절차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간 계사의 정본을 작성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주서이다. 주서는 승지와 함께 臺廳에 나아가서 대간 계사의 초본을 받아 승정원으로 가지고 와서 정본을 작성하였던 것이다. □은대조례□가 조선 말기인 고종대의 자료이기는 하지만 그 이전부터도 대간 계사를 위

년 8월 9일자 注書 柳台佐가 편철해 놓은 傳敎軸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이다. “答三司曰:‘不允。 末端事, 付丙矣。’ 答兩司曰:‘不允。’ 答院曰:‘不允。 下諭事, 依啓。’ 司憲府、司諫院、弘文館。”

34) 한국학자료센터 영남권역센터(<http://yn.ugyo.net>),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안동 하회 풍산류씨 화경당, 1799년 8월 9일자 注書 柳台佐가 편철해 놓은 傳敎軸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이다. “嘉慶四年己未八月初九日乙未晴。 上在昌德宮。 停常參、經筵。 臺啓三件全騰。 上。”

35) 한국학자료센터 영남권역센터(<http://yn.ugyo.net>),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안동 하회 풍산류씨 화경당, 1799년 8월 9일자 注書 柳台佐가 편철해 놓은 傳敎軸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이다. “憲府無傳啓。”

36) 이날 傳敎軸에는 執義 沈奎魯의 避嫌啓辭와 사간원의 下諭啓辭, <그림-5>의 ‘사헌부는 전계가 없다.[憲府無傳啓。]’ 등 3건만 기록되어 있고, 論劾啓辭에 해당하는 三司의 啓, 兩司의 啓, 사간원의 계사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에 반해 이날 □승정원일기□에는 傳敎軸의 기록 이외에도 三司의 啓, 兩司의 啓, 사간원의 계사가 모두 기록되어 있다.

37) □銀臺條例□ 刑攷 臺諫, “傳啓時, 承史出接臺廳受來, 注書正書, 【新啓付頭籤, 添入、抹去處付傍籤。】 晝則填時, 夜則填更, 以承傳色入啓, 批下, 承史又往傳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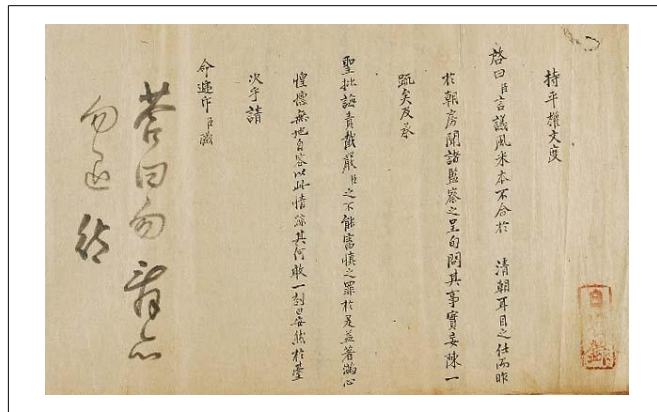
의 내용처럼 작성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승정원일기□ 등에 다수 보인다.<sup>38)</sup> 주서가 대간 계사를 정서한 뒤에는 초본을 대간에게 돌려주었던 것으로 보인다.<sup>39)</sup> 대간이 입시하여 국왕 앞에서 계사를 아뢴 경우에는 일단 초본으로 아뢴 뒤에 물러 나와서 초본을 주서에게 전달하여 정본을 작성하도록 하였다.<sup>40)</sup> 대간 계사의 내용이 승지와 관련이 있어서 승지가 臺廳에 나아갈 수 없는 경우에는 주서만 臺廳에 나아가되, 계사는 대간이 직접 정본을 작성하여 승전색에게 전달하였다.<sup>41)</sup> 그 외에 三司가 伏閣하였을 경우에는 승지가 三司의 伏閣啓辭를 작성하였다.<sup>42)</sup>

둘째, 정본의 작성 장소는 승정원이나 臺廳이다. 대간 계사의 정본은 승지와 주서가 臺廳에 나아가 받아와서 승정원에서 작성하였다. 이때의 대간 계사는 사헌부나 사간원이 단독으로 올리는 계사를 가리킨다. 兩司나 三司가 합동으로 올리는 合啓는 주서가 臺廳에서 정본을 작성하였다.<sup>43)</sup>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간 계사 중에 승지와 관련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대간이 정본을 작성하였으므로 이럴 경우에는 臺廳에서 정본을 작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정본의 작성 시기는 兩司로부터 대간 계사의 초본을 넘겨받은 뒤이다. 사헌부나 사간원이 단독으로 올리는 계사는 申時까지 入啓해야 하였으므로 申時까지는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兩司나 三司의 合啓는 3更까지 入啓해야 하였으므로 3更까지는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었다.<sup>44)</sup>

넷째, 주서가 작성한 정본은 승지가 초본과 대조 검토를 한 뒤에 승전색을 통해 入啓하였다.<sup>45)</sup>

다음으로 대간 계사의 정본을 작성하는 방식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6> 1799년(정조 23) 臺諫 啓辭의 正本<sup>46)</sup>

38) □승정원일기□ 현종 7년 2월 26일; □승정원일기□ 영조 9년 2월 20일.

39) □승정원일기□ 영조 6년 4월 23일.

40) □승정원일기□ 현종 2년 8월 25일, 정조 1년 8월 14일.

41) □銀臺便放□ 刑房放 臺諫, “六承旨俱有嫌臺啓不得出接, 則臺諫自書直傳承傳色, 而史官則進去。”; □銀臺條例□ 刑房 臺諫, “在院承旨俱有嫌臺啓, 不爲出接, 只史官進去, 而啓辭, 臺諫自書直傳承傳色。”

42) □銀臺便放□ 刑房放 臺諫, “三司伏閣時, 承史進去, 伏閣啓辭辭意, 自三司書來, 則承旨正書入啓。”

43) □銀臺便放□ 刑房放 臺諫, “三司會臺廳合辭時, 該房承旨詣臺廳, 啓辭, 史官仍於臺廳正書, 請承傳色入之。【勿拘齋日承旨讀傳】”

44) 주 21) 및 22) 참조.

45) □승정원일기□ 영조 3년 윤3월 25일, “臺啓傳納, 事體至重, 承史出而受去, 注書則贍書, 承宣則考准, 然後上達者, 非但存事面而已, 亦出於審慎之意也。”

46) 한국학자료센터 영남권역센터(<http://yn.ugyo.net>),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안동 하회 풍산류씨 화경당, 1799

<그림-6>은 정조 23년 8월 24일자 傳敎軸에 실려 있는 대간 계사로 같은 날짜의 □승정원일기□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실려 있다.<sup>47)</sup> □銀臺便攷□와 □銀臺條例□에서 ‘新啓는 잘라서 傳敎軸에 붙인다.’라고 한 점과 □승정원일기□에서 ‘臺諫 啓辭는 승정원에 남겨둔다.’라고 한 점으로 볼 때 <그림-6>은 대간 계사의 정본일 가능성이 크다.<sup>48)</sup> 다만 비답은 별도로 작성해서 대간 계사의 초본과 함께 대간에게 전달했을 것으로 보인다.<sup>49)</sup> <그림-6>은 서두에 ‘持平權文度啓曰’이라 하여 계사를 올리는 대간의 職名과 姓名이 기록되어 있고, 본문에는 權文度가 避嫌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며, 말미에는 ‘請命遞斥臣職’이라 하여 최종적으로 權文度가 정조에게 遞差해줄기를 청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며, 마지막으로 왼쪽 여백에 정조의 비답이 적혀 있다. 이 정보는 서두에 대간의 職名과 姓名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 문서의 후면에 명단을 기록했던 초본과 다른 점이라고 하겠다. 그 외에 정본을 작성하는 단계에서 추가되는 사항은 入啓할 때의 시각을 써넣는 점이라고 하겠다. 대간 계사의 정본에는 초본과 달리 入啓하는 시각을 써넣되, 낮에 入啓하면 時를 써넣고 밤에 入啓하면 更을 써넣었다.<sup>50)</sup> 이러한 규정은 대간 계사를 入啓하도록 규정된 시각을 지키게 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劄記계사와 처치계사에는 시각을 써넣지 않았다.<sup>51)</sup> <그림-6>도 劄記계사이기 때문에 시각을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대간 계사의 여러 가지 사안을 어떤 방식으로 기록하였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대간 계사는 사헌부와 사간원이 각각 단독으로 올리는 계사가 있고, 사헌부와 사간원, 또는 兩司와 弘文館이 합동으로 올리는 계사가 있었다. □승정원일기□에는 사헌부가 올린 대간 계사를 府啓라 기록하고 사간원이 올린 대간 계사를 院啓라고 기록하였으며, 兩司나 三司가 함께 올린 계사는 合啓라고 기록하였다.<sup>52)</sup> 이들 府啓, 院啓, 合啓는 각각 국왕에게 아뢴 특정 사안에 대해 기록한 문서인데, 동일한 문서 안에서도 여러 가지 사안을 기록할 수가 있었다. 즉 府啓나 院啓 안에도 여러 가지 사안을 기록 수가 있고, 合啓 안에도 여러 가지 사안을 기록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각각의 사안을 각각 다른 종이에 작성할 것인지, 아니면 한 장의 종이에 모두 작성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우선 승정원에서 肅宗에게 아뢴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년 8월 24일자 注書 柳台佐가 편철해 놓은 傳敎軸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이다. “【日省錄】持平權文度啓曰:‘臣言議風采, 本不合於清朝耳目之任, 而昨於朝房, 聞諸監察之呈旬, 問其事實, 妄陳一疏矣。及承聖批, 誨責截嚴, 臣之不能審慎之罪, 於是益著, 滿心惶懼, 無地自容。以此情踪, 其何敢一刻晏然於臺次乎! 請命遞斥臣職。’ 答曰: ‘勿辭, 亦勿退待。’”

47) 오른쪽 하단에 찍힌 ‘日省錄’ 3자는 이 문서가 □일성록□에 수록해야 할 문서임을 표시한 것이다. □승정원일기□ 정조 10년 2월 26일, “崑秀曰:‘日省錄文書漸益浩繁, 而每日各項啓下公事名目多岐, 輒有遺漏之慮。 臣意則依政院之出朝報例, 凡係當入日省錄者, 無論狀啓、草記、啓目, 以日省錄三字成出小條, 本閣抄出時, 隨卽印識, 以爲憑考之地, 似合事宜, 而有難擅便, 故敢此仰達矣。’ 上曰:‘依爲之。’”

48) □銀臺便攷□ 刑房攷 臺諫, “避嫌、處置, 不填時, 而臺啓或有新啓與下諭, 則割付傳敎軸, 前啓, 還爲封入。 … 批下後, 詣臺廳傳批。”; □銀臺條例□ 刑攷 臺諫, “批下, 承史又往傳批。【原啓還爲封入, 新啓割付傳敎軸。】”; □승정원일기□ 효종 3년 9월 29일, “大概臺諫啓辭、各曹草記, 則留置本院, 故本院例爲捧傳旨。”; □승정원일기□ 숙종 10년 3월 27일, “如各司草記、臺諫啓辭, 則文書俱在, 雖不能趁卽修正, 可無遺誤之患。”

49) 위와 같음.

50) □銀臺便攷□ 刑房攷 臺諫, “臺啓入啓時, 晝則填時, 夜則填更。【避嫌、處置, 不填時, 而臺啓或有新啓與下諭, 則割付傳敎軸, 前啓, 還爲封入。】”

51) 위와 같음.

52) □승정원일기□ 인조 16년 3월 10일, “合啓, 答曰:‘勿煩。’ 府啓, 答曰:‘依啓。 申景瑗事, 不允。’ 院啓, 答曰:‘不允。’”

일반적으로 대간 계사는 城上所가 臺廳에 나아와서 직접 써서 전하기 때문에 連啓하는 啓辭라 하더라도 전에 올린 초본을 그대로 전할 수가 없고 날마다 다시 써야 합니다. 게다가 한 장의 종이에 두 가지 사안을 연이어 쓸 수 없는 것이 관례입니다. 대간이 時事에 대해 아뢰는 일은 체모가 매우 엄중하지만, 승정원에서 문서를 출납하는 규정도 엄중합니다. 방금 사간원이 前啓 1통과 新啓 3통을 전하였는데, 그중 1통은 글씨가 다르고 1통은 두 가지 사안을 1장에 연이어 써서 대간의 규례를 어겼으므로 도로 내주겠습니다. 감히 아뢰입니다.<sup>53)</sup>

위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동일한 院啓라도 서로 다른 사안을 한 장의 종이에 쓰는 것과 한 가지 사안을 서로 다른 사람이 나누어 쓰는 것은 규례를 어기는 것이라는 점이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서로 다른 사안은 각각의 종이에 한 사람이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입증해주는 기사는 □승정원일기□의 다른 기사에서도 확인이 된다. 대간 계사의 서로 다른 사안을 한 장의 종이에 써서 들인 일로 인해 승지를 책망하자, 승정원에서는 대간이 전해준 계사의 초본에 오류가 있는 줄 알았더라도 그대로 써서 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관례라고 보고한 사례가 보인다.<sup>54)</sup> 그런데 □승정원일기□의 다른 기사에는 서로 다른 사안을 한 장의 종이에 쓰는 것이 관례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보이기도 한다.<sup>55)</sup> □승정원일기□의 英祖代 기사에는 대간이 臺廳에서 전달한 계사는 한 장에 쓰고 대간이 입시해서 아뢰는 계사는 사안별로 각각 다른 종이에 쓰는 것이 옛 규레이므로 이를 준수하도록 한 내용이 보인다.<sup>56)</sup> 이처럼 대간 계사를 사안별로 각각 다른 종이에 작성할지 아니면 한 장의 종이에 작성할지는 계속 논란이 되어 왔는데, 이러한 논란은 정조 때에 와서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었다.

“대간 계사를 각각의 종이에 쓰지 말고 한 장의 종이에 쓰되, 사안이 달라지는 곳에 ‘또 아뢰기를[又所啓]’이라고 쓰라. 만약 兩司의 新啓가 있으면 前啓 1장에 新啓가 여러 건이라 하더라도 ‘사헌부의 신계[府新啓]’나 ‘사간원의 신계[院新啓]’라고 각 1장씩만 쓰라. 기타 대간들이 입시하여 아뢰 舉行條件은 한 사람이 아뢰는 사안이 여러 건이더라도 모두 1장에 쓰고, 朝報에 낼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朝報에 내도록한 조목에만 ‘出朝報’라고 찍어서 주라.”라고 하교하였다. 【갑인년(1794, 정조18) 정월 10일】<sup>57)</sup>

위의 내용을 통해 府啓 1장에 사헌부에서 올리는 대간 계사를 사안별로 구별하여 모두 기록하고, 院啓 1장에도 사간원에서 올리는 대간 계사를 사안별로 구별하여 모두 기록하도록 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미루어보면 승啓도 사안별로 구별하여 1장의 종이에 모두 기록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은 대간이 臺廳에 나아가서 傳啓할

53) □승정원일기□ 숙종 1년 12월 6일, “凡臺閣啓辭, 城上所來詣臺廳, 親自書傳, 故雖連啓啓辭, 不得仍傳前草, 必日日改書, 而且一張紙, 不得聯書兩件事, 例也。 臺閣奏事事體甚嚴, 本院出納之規亦重, 而卽者諫院, 前啓一度、新啓三度來傳, 而其中一度異書, 一度則兩件事連書一張, 有違臺例, 還爲出給之意, 敢啓。”

54) □승정원일기□ 숙종 2년 8월 7일, 11년 1월 12일.

55) □승정원일기□ 숙종 원년 12월 6일·7일.

56) □승정원일기□ 영조 49년 윤3월 27일, “自古凡於臺啓入侍時舉條, 各張; 循例傳啓時, 竝書, 而紙頭書某時, 此例也。”

57) □政院故事□ 刑攷 臺諫, “臺啓, 勿以各張書之, 更端處, 以又所啓書之。 若有兩司新啓, 則前一張, 雖新啓累度, 只以府新啓、院新啓各一張爲之。 其他諸臣舉條, 一人所奏, 雖累件, 皆以一張書之。 有出朝報者, 只於出朝報條, 印給出朝報。’事, 下教。 【甲寅正月初十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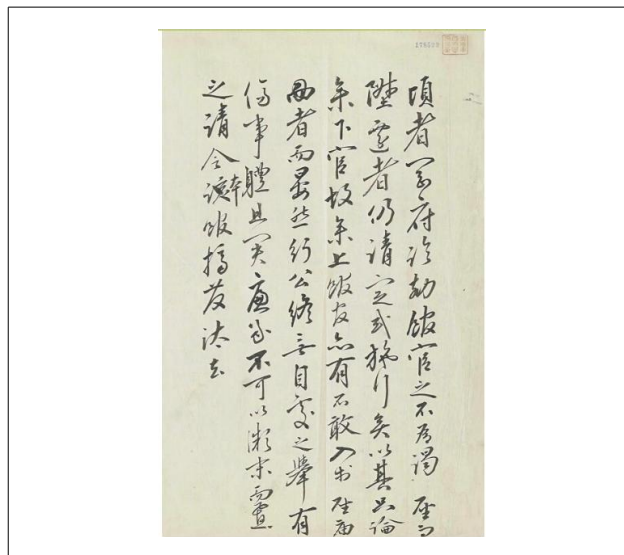
때나 입시하여 傳啓할 때나 구분 없이 똑같이 적용되었다.

### III. 臺諫 啓辭의 분류

대간 계사는 문서를 올리는 주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에 따라 獨啓와 合啓로 나눌 수가 있고, 계사에서 거론한 사안이 새로운 사안인지 전에 올리던 사안인지에 따라 新啓와 前啓로 나눌 수가 있다. 여기에서는 대간 계사를 그 내용에 따라 論劾啓辭, 避嫌啓辭, 處置啓辭, 下諭啓辭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sup>58)</sup>

#### 1. 論劾啓辭

論劾啓辭란 대간이 국왕의 시책에 대해 諫諍하거나 관원의 처신에 대해 彈劾하는 내용의 계사를 가리킨다.<sup>59)</sup> 논핵계사의 정본은 확인하지 못했으나, 초본 중에는 일부 논핵계사가 남아 있다.



<그림-7> 1687년(숙종 13) 논핵계사 草本<sup>60)</sup>

<그림-7>은 1687년(숙종 13)에 사간원에서 올린 논핵계사로, 성균관 관원으로 임명되어 謝恩肅拜한 뒤에 謁聖을 행하지도 않은 채 공무를 행하고 있는 參上官도 參下官과 마찬가지로 적발하여 汰去하기를 청하는 내용이다. 이 초본에는 계사를 올린 관원들의 명단이 기록

58) 이러한 분류는 □승정원일기□에 기록된 대간 계사의 내용을 참고하여 분류한 것이며, □銀臺便攷□「刑房攷」에서 대간과 관련된 내용을 「臺疏」, 「臺諫」, 「避嫌」, 「處置」, 「下諭」 등 5개 항목으로 분류한 것도 참고하였다.

59) 論劾이라는 말은 관원을 탄핵할 때 주로 사용되는 어휘이나, 대간이 국왕의 시책에 대해 諫諍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논핵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가 있겠다. 정두희는 諫諍이 사간원의 고유 기능이고 彈劾은 사헌부의 고유 기능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그러한 구분이 의미가 없다고 하였다. 정두희, 위의 책 56~58쪽 참조.

60)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 규장각 소장 178522, 啓文草啓文, 가로 32cm이고 세로 51cm이다. “頃者, 憲府論劾館官之不爲謁聖而陞遷者, 仍請定式施行矣。 以其只論參下官, 故參上官亦有不敢入於聖廟者, 而晏然行公, 終無自處之舉, 有傷事體, 且關廉義。 不可以微末而置之, 請令本館摘發汰去。” 이 논핵계사의 내용은 □승정원일기□ 숙종 13년 4월 16일 기사에 ‘院啓’ 중 ‘新啓’로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

되어 있지 않지만, 啓辭의 일반적인 文書式이나 현재 남아있는 다른 啓辭의 정본을 참고해 볼 때 이 계사의 정본 서두에도 문서를 올린 관원의 명단이 기록되었을 것으로 보인다.<sup>61)</sup> 그렇게 보면 논핵계사의 내용은 서두의 문서를 올린 관원의 職名과 姓名, 본문의 論劾하는 내용, 말미의 ‘請’ 자로 시작하여 국왕에게 요청하는 내용 등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볼 수가 있겠다.

대간 계사의 내용 중에서 논핵계사가 차지하는 비중과 그 내용을 살펴보기 위하여 □승정원일기□ 정조 7년 6월 25일에 기록된 대간 계사를 내용에 따라 분류해보면, 避嫌啓辭 1건, 處置啓辭 1건, 下諭啓辭 1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42건이 모두 논핵계사에 해당한다. 이 42건의 논핵계사 내용을 다시 三司의 合啓, 兩司의 合啓, 司憲府의 啓辭, 司諫院의 啓辭로 분류해보면 아래에 제시한 표와 같다.

<표-1> 1785년(정조 7) 6월 25일 논핵계사의 분류와 내용

논핵계사의 분류	논핵계사의 내용
三司의 合啓	01. 請黜置罪人鄭致達妻爲先還配海島以洩神人之憤。 02. 請黑山島圍籬安置罪人龜柱設鞫嚴問夫正王法。 03. 請物故罪人德相亟施孥籍之典。
兩司의 合啓	01. 請彥衡會遂獻遂竝令王府設鞫嚴問。 02. 請還寢會遂絕島定配之命仍令王府設鞫得情。 03. 請還寢李觀源定配之命更令王府設鞫得情。 04. 請遲晚後物故罪人啓能亟施孥籍之典。 05. 請令王府一依古典趾賊等凶種之年未滿者待其稍長卽施邦刑俾絕凶逆易種養禍之患。 06. 請楸子島荇棘罪人最中更令王府拿致設鞫期於得情夫正王法。 07. 請亟寢煥億島配之命仍令王府加刑得情夫施王章。 08. 請湖西營獄散配諸罪人等放送及出陸減等之命一竝還寢仍令王府設鞫嚴問夫施當律。 09. 請島配罪人貞采亟令王府更爲設鞫夫正王法。
司憲府의 啓辭	01.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依律處斷。 02. 請興陽縣爲奴罪人河翼龍南海縣爲奴罪人金重得亟令王府設鞫得情夫正王法。 03. 請大靜縣爲奴罪人聖中亟令王府設鞫嚴問期於得情夫正王法。 04. 請削板罪人有臣宗甲義駿竝令王府設鞫嚴問依律處斷。 05. 請康津縣量移罪人趙嶠亟寢酌處之命仍令王府設鞫得情夫正王法。 06. 請薪智島荇棘罪人瑩中設鞫嚴問夫施當律。 07.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亟令王府拿鞫嚴問。 08. 請物故罪人國榮亟施孥籍之典。 09. 請李義翊更令王府設鞫嚴問期於得情。 10. 請金養淳亟令王府更爲設鞫期於得情。 11. 請李義直亟令王府設鞫得情夫正典刑。 12. 請黑山島定配罪人任觀周亟令王府設鞫嚴問期於得情。 13. 請捕廳罪人煥九亟令王府嚴加鞫問夫正典刑。 14. 請奉化縣監尹寅喆罷職。
司諫院의 啓辭	01.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更令王府設鞫嚴問依律處斷。 02. 請爲奴罪人河翼龍金重得亟命王府設鞫得情夫正王法。 03.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放送罪人有臣宗甲義駿竝令王府設鞫嚴問期於得情夫正王法。 04. 請金甲島爲奴罪人克泰驪川縣定配罪人萬赫更令王府嚴鞫得情夫正王法。 05. 請還寢遠配罪人安兼濟放送之命仍令王府設鞫嚴問期於得情。 06. 請恒·善支屬亟命散配時謙兄弟竝投絕島以嚴隄防。 07. 請荇棘罪人瑩中亟令王府設鞫嚴問夫施當律。

61) 대간 계사의 正本 작성 참조.

	08. 請巨濟府絕島安置罪人朴宗集亟令王府拿鞠得情施以當律。 09. 請減死定配罪人德秀亟令王府更加嚴鞠夫正王法。 10. 請逆賊尙魯亟施孥籍之典。 11. 請物故罪人國榮亟施孥籍之典。 12. 請爲奴罪人夢麟定配罪人崔鍾岳放送罪人有源鄭聖休亟令王府更爲設鞠期於得情各施當律。 13. 請島配罪人崔光泰金天欽亟令王府設鞠得情夫正典刑。 14. 請甲山府竄配罪人洪樂彬亟令王府設鞠嚴問施以當律。 15. 請義翊更令王府設鞠嚴問期於得情夫正王法。 16. 請還寢德相應坐諸囚發配之命仍令牢囚嚴訊取服各施當律。
--	--

<표-1>에 보이듯이 42건의 논핵계사는 죄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 사건에 대한 명확한 조사, 현직 수령의 파직 등을 청하는 내용들이다. 이처럼 논핵계사는 그 비중으로나 내용으로나 대간 계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대간이 施政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官員을 탄핵하는 등 言官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하겠다.<sup>62)</sup>

위에서 살펴본 □승정원일기□ 정조 7년 6월 25일의 대간 계사 중 논핵계사는 대부분 서두와 말미의 ‘請’ 자 이하만 기록되어 있고, 奉化縣監 尹寅喆의 罷職을 청한 계사만 유일하게 全文이 기록되어 있다. 이외에 □승정원일기□에 기록된 논핵계사 중에는 서두 이외에 ‘請’ 자 이하마저 생략하여 人名 뒤에 ‘事’ 자만을 붙여서 여러 가지 사안을 함께 기록한 경우도 보인다.<sup>63)</sup>

대간 계사는 1개의 관사만 단독으로 올리는 獨啓와 2개 이상의 관사가 합동으로 올리는 合啓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분류는 특히 논핵계사의 분류에 적용되었다.<sup>64)</sup> 앞의 <표-1>에서 논핵계사를 ‘삼사의 합계’, ‘양사의 합계’, ‘사헌부의 계사’, ‘사간원의 계사’로 분류하였는데, ‘사헌부의 계사’와 ‘사간원의 계사’를 獨啓라 할 수 있고 ‘삼사의 합계’와 ‘양사의 합계’를 合啓라 할 수 있다.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獨啓를 금지하고 반드시 合啓로 아뢰도록 하였다. 大臣, 國舅, 宗親, 儀賓, 山林에 대해 論劾할 때에는 獨啓할 수가 없고 반드시 삼사의 合啓로만 아뢰도록 한 것이 그러한 예라고 하겠다.<sup>65)</sup> 合啓 중 양사의 合啓는 兩司의 城上所만 臺廳에 나아가서 동일한 내용의 啓辭를 함께 入啓하는 것을 가리키며, 兩司의 많은 대간들이 臺廳에 나아가서 동일한 내용의 啓辭를 함께 入啓하는 것은 合司라고 하여 구별하기도 하였다.<sup>66)</sup>

논핵계사를 올리기 시작할 때에는 동료 대간들에게 簡通을 보내 동의를 구하여 서로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 傳啓하기 시작하였는데, 이처럼 어떤 사안에 대한 논핵계사를 올리기 시

62) 최승희는 대간의 언론 활동을 諫諍, 彈劾, 施政, 人事 등 네 가지로 나누어 서술하였고, 목정균도 대간의 言論 유형을 이 네 가지로 분류하여 서술하였다. 최승희, 앞의 책 31~46쪽, 목정균, 앞의 책 106~140쪽 참조.

63) □승정원일기□ 숙종 9년 9월 2일, “府啓, 金重夏事; 崔尙仰, 朴斗卿事; 金煥事; 趙持謙, 韓泰東, 吳道一事; 刑曹堂郎從重推考, 穉奉等還爲嚴囚明嚴處決事。”

64) 獨啓는 1개의 관사에서 올린 啓辭를 지칭하는 경우 이외에 1명의 대간이 단독으로 올린 啓辭를 지칭하기도 하였다. 피핵계사와 처치계사 중에도 兩司의 대간이 함께 올린 合啓가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合啓라고 하면 논핵계사를 가리킨다. □승정원일기□ 숙종 28년 1월 15일, “兩司合辭, 異於獨啓.”; □승정원일기□ 숙종 28년 6월 7일, “自上以大臣論罪, 一司獨啓, 事體不當之意, 下教于諸臣云, 臣益不勝惶悚也。凡大臣, 既無官職, 則一司獨啓, 前例非一。… 況合啓既停之後, 今復論啓於付處之後累日, 則其不宜準諸在職之大臣, 必待合司之啓也.”; □승정원일기□ 효종 3년 9월 18일, “憲府見存官員, 非一二而此人, 何以獨啓耶?”; □승정원일기□ 숙종 17년 1월 30일, “一人獨啓, 亦時有之, 而事體則不然也。”

65) □銀臺條例□ 刑劄 臺諫, “大臣及國舅, 宗親, 儀賓, 山林聲討, 三司聯啓.”; □승정원일기□ 영조 3년 10월 8일, “凡大臣之職名存焉者, 則一司之不爲獨啓, 乃是舊例, 而昨日持平李廷錫, 不有古例, 驟然獨啓。”

66) □광해군일기□ 즉위년 9월 25일(기유), “兩司城上所同詣闕, 同辭入啓, 謂之‘合啓’, 兩司多官俱詣闕, 謂之‘合司’, 其實無異同矣。”

작하는 것, 또는 어떤 사안에 대한 논핵계사를 올리자고 발의하는 것을 發啓라고 하였다.<sup>67)</sup> 한번 發啓한 논핵계사는 국왕의 윤허를 받지 못하면 매일 연속적으로 傳啓하였는데, 이를 連啓라고 하였다.<sup>68)</sup> 發啓한 논핵계사에 대해 국왕의 윤허를 받거나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또는 계속 連啓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사안에 대한 논핵계사의 傳啓를 중지하였는데, 이를 停啓라고 하였다.<sup>69)</sup> 따라서 대간이 發啓한 논핵계사에 대해 국왕의 허락을 받지 못하면, 대간들은 해당 논핵계사를 連啓할 것인지 아니면 停啓할 것인지를 정해야 하였다.<sup>70)</sup> 대간이 連啓하거나 停啓하는 것은 대간들의 자율적인 합의에 따라 정하였고, 국왕은 원칙적으로 이에 간여할 수가 없었다.<sup>71)</sup> 만약 發啓한 논핵계사를 連啓하지도 않고 停啓하지도 않으면 대간이 傳啓를 빼먹은 책임, 즉 闕啓한 책임을 지고 避嫌하였다.<sup>72)</sup> 連啓하던 논핵계사를 停啓할 때에는 동료 대간들의 동의를 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초에 發啓했던 대간에게 반드시 동의를 구하는 것이 관례였던 것으로 보인다.<sup>73)</sup> 대간이 臺廳에 나아왔을 때 停啓할 논핵계사가 있을 경우에는 승정원에 이를 구두로 전달하고 ‘어느 사안을 정계하였다.[某事停啓]’라고 써서 보내면, 승정원에서 국왕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고, 兩司에서 써서 보내온 것을 傳敎軸에 붙였다.<sup>74)</sup> 대간이 논핵계사의 傳啓를 완전히 중지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를 姑停이라고 하였다. 사헌부의 啓辭나 사간원의 啓辭를 申時까지 傳啓하지 못한 경우, 공무를 행하는 대간이 兩司의 長官만 있을 경우, 국왕이 齋戒하는 시기일 경우, 祭享을 지내는 시기일 경우, 産室廳이 설치되어 있는 시기일 경우, 군신의 합의로 특정 사안에 대해 국왕의 처분을 기다리는 때일 경우 등은 傳啓를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중지하였다.<sup>75)</sup> 傳啓를 완전히 중지한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한 啓辭를 城上所에게 보내주고, 군신의 합의로 姑停한 경우에는 啓辭를 城上

67) □승정원일기□ 정조 4년 2월 13일, “合辭之規, 必先簡通謹悉, 商議停當, 然後乃可發啓。”; □정조실록□ 4년 2월 14일(계해), “大抵合辭之規, 若於臺廳發啓, 則三司中人, 無論入來與不入來, 一竝簡通, 至於入侍啓辭, 則只與入侍人先議者, 不易之規也。”; □승정원일기□ 영조 39년 5월 23일, 정조 16년 윤4월 4일.

68) □영조실록□ 24년 5월 28일(신해), “三司合啓, 事體嚴重. 三司若俱會, 則必相問議, 議合則連啓, 不合則各自引嫌, 例也.”; □정조실록□ 18년 9월 5일(기축), “若使南海有還人之舊啓未停, 則勢將連啓, 而欲連啓, 則當在伊日新發合啓之上, 卽不易之格例。”

69) □승정원일기□ 영조 19년 8월 3일, “當初發啓, 未允物議, 則停啓之臺, 誠爲得體, 而反咎其停啓, 至請譴罷, 則推上一層也.”; □승정원일기□ 정조 18년 8월 29일, “夫停啓云者, 三司停當以停呼望之謂也。”

70) □승정원일기□ 영조 9년 8월 6일, “夫臺啓之或停或否, 都在於公議之如何, 在聖明公聽竝觀之道, 亦宜一付之臺臣.”; □승정원일기□ 영조 13년 9월 3일, “夫臺閣之規, 與同僚行相會禮, 雖是前啓之可停者, 必簡問於同僚, 議論俱一, 然後停之, 而兼濟, 則初既發啓, 曾無異辭, 而不復一番連啓, 及今亦不簡問同僚急停啓者, 抑何意?”

71) □승정원일기□ 영조 7년 7월 11일, “發啓者, 固臺閣事也, 停啓者, 亦臺閣事也, 則其發其停, 惟當一付於公議, 雖以人主之尊, 亦安得以尼之使之乎!”; □승정원일기□ 영조 39년 5월 18일, “臺啓之連啓, 停啓與發啓, 惟在臺閣之公議, 而非人主之所可下教矣。”

72) □승정원일기□ 숙종 20년 윤5월 4일, “固當以前日所爭者, 卽爲連啓, 而臣昏謬太甚, 默無一言, 終至闕啓, 物議之來, 實難自解.”; □승정원일기□ 영조 24년 5월 28일, “三司合啓, 勿論停連, 三司合議, 然後或停或連. 而今則不然, 三司同入, 而只傳兩司舊啓而退, 既不可謂連啓也; 不問於玉署, 故今者儒臣, 至於請罪兩臺, 又不可謂停啓也. 若以臺規言之, 則謂之闕啓可矣。”

73) □六典條例□ 吏典 司憲府 臺體, “臺啓中有停啓之人, 則簡通其時發啓之員. 【死後停啓則否.】”; □승정원일기□ 정조 14년 3월 12일, “臺閣啓體, 本自謹嚴, 既發之後, 如有可停之議, 則一邊簡問於初發之人, 而仍呼停啓, 乃是不易之規也.”

74) □銀臺便攷□ 刑房攷 臺諫, “臺諫詣臺之時, 若有當停之啓, 言送政院, 政院以停啓依例書入. 【臺啓入啓時, 以司謁入啓. ○ 以某事停啓, 自兩司書來, 付傳敎軸.】”

75) □銀臺便攷□ 刑房攷 臺諫, “府院啓, 則限申時, 申後則出日暮姑停望. … ○ 兩司長官, 只參合啓, 而府院啓, 則以無城上所, 出姑停望. 【若入侍, 則合啓與府院啓, 并爲之.】 ○ 散齋日, 臺諫亦請牌招. 【合啓, 則依例爲之, 府院啓, 則不得爲之, 以散齋相值, 出姑停望.】”; □승정원일기□ 현종 6년 6월 19일, 정조 24년 5월 2일, 24년 윤4월 25일; □순조실록□ 9년(1809) 5월 12일(신미).



所에 보류해두고서 결말을 기다렸다.<sup>76)</sup>

위에서 發啓한 논핵계사의 내용을 국왕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매일 반복해서 다시 올린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때 새로 發啓한 논핵계사를 新啓라 하고, 전에 올렸던 내용을 반복해서 다시 올리는 논핵계사를 前啓나 舊啓라고 하였다.<sup>77)</sup> 논핵계사는 이처럼 新啓와 前啓로도 나눌 수가 있다. 新啓를 入啓할 때에는 윗 부분에 찌지를 붙여 표시하였다.<sup>78)</sup> 前啓를 連啓할 것인지 停啓할 것인지를 대간들이 서로 상의하여 결정한다는 것은 앞에서 살펴보았다. 前啓는 전에 올렸던 啓辭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기도 하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기도 하였는데, 수정하거나 추가한 부분에는 옆에 찌지를 붙여 표시하였다.<sup>79)</sup> 습啓 중 新啓를 전할 때 및 비답을 받을 때에는 상위 승지와 하위 승지가 모두 臺廳에 나아가서 동참하였으나, 습啓 중 前啓를 전할 때 및 비답을 받을 때에는 하위 승지만 臺廳에 나아가서 동참하였다.<sup>80)</sup> 국왕이 대간의 논핵계사에 대해 윤택할 경우에는 ‘아뢰는 대로 하겠다. [依啓]’라고 비답을 내리고, 新啓에 대해 윤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윤택하지 않는다.[不允]’라고 비답을 내리며, 前啓에 대해 윤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번거롭게 하지 말라.[勿煩]’라고 비답을 내려 서로 구별하였다.<sup>81)</sup> 前啓는 예전에 아뢰는 내용을 반복해서 아뢰는 것이기 때문에 ‘故紙를 베껴서 전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였으며, 이처럼 故紙를 베껴서 반복적으로 올리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인지에 대한 비난과 회의가 일기도 하였다.<sup>82)</sup> 그러나 臺諫 啓辭가 公論을 전달하는 수단이고 보면 公論이 수용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대간의 책무로 인식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논핵계사는 국왕의 조치가 부당함을 지적하고 철회하기를 요청하는 내용, 국왕에게 어떤 사안을 시행하기를 요청하는 내용, 잘못을 저지르거나 탐욕을 일삼는 관원을 탄핵하고 처벌하기를 요청하는 내용 등이 주를 이룬다. 대간이 논핵 중인 죄수에 대해서는 국왕의 명이 있더라도 그 사안에 대한 결말이 날 때까지 형의 집행이 미루어졌다.<sup>83)</sup> 대간이 논핵계사를 올릴 수 있도록 한 것은 국왕의 독단을 견제하고 관원의 비행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論劾이 불러오는 폐해를 지적하는 경우도 있었다.<sup>84)</sup>

76) □승정원일기□ 현종 3년 6월 2일, “凡臺啓停止, 則啓草即送於城上所之家; 惟姑停之啓, 留置以待結末, 例也。”

77) 新啓라는 말은 논핵계사에 한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피협계사, 처치계사, 하유계사는 新啓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는 피협계사, 처치계사, 하유계사는 모두 新啓와 前啓를 구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피협계사, 처치계사, 하유계사를 新啓로 부르는 경우가 더러 보이기도 하는데, 이러한 계사들은 모두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단 한 차례씩만 올리는 계사이기 때문에 前啓가 별도로 있어서가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新啓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하겠다. □銀臺便攷□ 刑房攷 臺諫, “辛丑年, 則避嫌、新啓外, 無前啓并舉之事; 壬申年, 則雖行公臺諫, 避嫌等事外, 亦無詣臺傳啓之舉於產室設廳時。”; □銀臺便攷□ 刑房攷 臺諫, “避嫌、處置, 不填時, 而臺啓或有新啓與下諭, 則割付傳教軸, 前啓, 還爲封入。”; □승정원일기□ 영조 16년 1월 4일, “無他新啓, 有下諭啓辭矣。”; □승정원일기□ 영조 17년 1월 25일, “臺諫入侍啓辭之規, 若有新啓, 則下諭前爲之例也。新啓後, 若有人言, 則下諭前, 引避退待, 前後非一。”

78) □銀臺條例□ 刑房 臺諫, “新啓付頭籤, 添入、抹去處付傍籤。”

79) 위와 같음.

80) □六典條例□ 吏典 司憲府 詣臺, “三司合啓時, 承史出詣臺廳, 同爲傳啓, 而亦同承批旨。【新啓, 則右下位並參; 舊啓, 則下位爲之, 而承批, 則同參。】”

81) □승정원일기□ 인조 16년 3월 10일, “습啓, 答曰:‘勿煩。’ 府啓, 答曰:‘依啓。 申景瑗事, 不允。’ 院啓, 答曰:‘不允。’”; □승정원일기□ 영조 2년 12월 23일, “凡啓辭, 新啓則不允, 前啓則勿煩矣。”

82) □승정원일기□ 영조 39년 1월 9일, “自古譏謗傳故紙, 傳前啓者, 其何傷也!”; □승정원일기□ 정조 8년 8월 8일, “傳啓, 亦是懲討, 而近日臺啓, 久未蒙允, 謗傳故紙, 殆若按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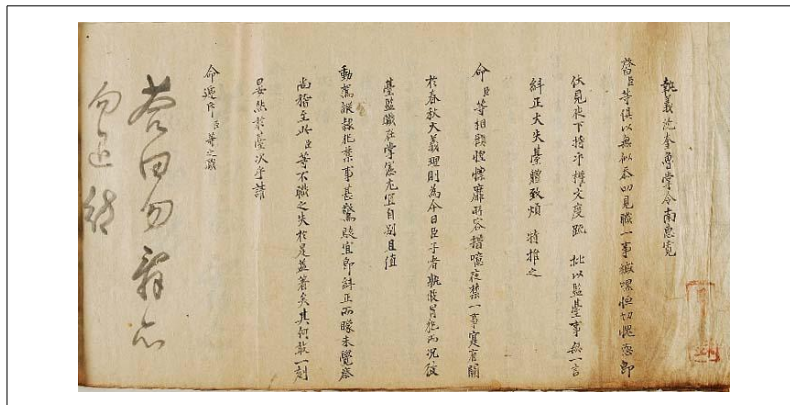
83) □승정원일기□ 정조 9년 4월 4일, “李祖源, 以刑曹言啓曰:‘罪人洪益榮放送啓辭, 允下, 而臺啓方張, 不得舉行之意, 敢啓。’”; □승정원일기□ 정조 9년 4월 5일, “凡罪人之在囚繫者, 雖其負犯, 不甚關緊, 臺啓既發之後, 則尋常編配, 亦不得舉行, 自是已例。”

84) 柳壽垣은 다른 관원을 탄핵하는 것이 대간의 임무라고는 하지만 적용할 법률까지 거리낌 없이 정하는 것은

## 2. 避嫌 啓辭

避嫌啓辭란 대간이 다른 관원의 탄핵을 받았거나 국왕의 질책을 받았을 경우에 대간의 직무를 맡을 수 없다면 遞差해주기를 청하는 내용으로 올리는 계사를 가리킨다.<sup>85)</sup> 대간 등이 피혐한 사례는 조선 전기의 實錄에도 보이지만,<sup>86)</sup> 대간이 피혐계사를 올리고 물러나서 그에 대한 處置를 기다리는 것은 中宗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sup>87)</sup>

아래의 <그림-8>은 1879년(정조 23)에 執義 沈奎魯와 掌令 南惠寬이 올린 피혐계사 정본으로, 持平 權文度의 상소에 대한 비답에서 정조가 자신들을 책망한 일을 이유로 체차해주기를 청하는 내용이다. 이 정본에는 계사를 올린 持平 權文度의 職名과 姓名 및 ‘啓曰’이 서두에 기록되어 있고, 본문에는 피혐하는 사유, 말미에는 ‘請’ 자로 시작하여 체차해주기를 청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왼쪽 여백에는 정조의 비답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피혐계사도 논핵계사와 마찬가지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다. 즉 피혐계사를 올린 대간의 職名과 姓名 및 ‘啓曰’이 기록된 서두, 피혐하는 사유가 기록된 본문, ‘請’ 자 이하의 체차해주기를 청하는 내용이 그것이다.



<그림-8> 1879년(정조 23) 피혐계사 正本<sup>88)</sup>

전에 없던 폐단이라고 하였다. □迂書□ 卷4 論臺啓直勘律名之弊, “我國臺閣, 又有古今所未聞之規. 啓辭中直勘律名是也, 臺官雖主糾劾之責, 至於勘律, 必待法司可矣. 今乃任自定律, 小無所憚, 歷考前代, 實無此事. 其弊必至於世道糜爛而後已, 寧不寒心!”

85) 영조대 □弘文館志□ 式例 第6 處置式, “兩司官員中, 若有引嫌之事, 則【如被人譏斥及上旨誚責之類.】以啓辭自陳情勢, 請遞其職, 此所謂避嫌.”

86) □태종실록□ 1년 8월 13일(기사), “大司憲李原等避嫌不仕.”; □성종실록□ 3년 6월 21일(병술), “持平宜先避嫌.” 송용섭은 성종대에 대간의 피혐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이전과는 달리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된 점에 주목하여 그 배경과 의미에 대해 파헤쳤다. 다만 이 당시 대간의 피혐은 □傳啓辭나 上疏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송용섭, 앞의 논문 182~188쪽 참조.

87) 현종 5년(1664) 許積과 李景奭의 말에 의하면 이러한 제도는 중종 14년(1519)에 시작되었다고 하였고, 星湖 李滉도 대간이 피혐하는 제도가 中宗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였다. □승정원일기□ 현종 5년 10월 15일, “許積曰: ‘臺諫避嫌, 始自中廟朝, 其時先正臣趙光祖, 以爲臺諫異於庶官, 不可無廉隅, 故有此避嫌之規云矣.’ 李景奭曰: ‘避嫌退待之規, 己卯時始爲之, 而先正臣【缺】爲大司憲, 被諫院彈罷, 因大臣之啓請, 【缺】就職, 今豈能如此乎?’”; □星湖先生全集□ 卷45 雜著 論諫官, “臺諫避嫌, 自我中廟朝始, 規避於是成風矣.”

88) 한국학자료센터 영남권역센터(<http://yn.ugyo.net>),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안동 하회 풍산류씨 화경당, 1799년 8월 24일자 注書 柳台佐가 편찬해 놓은 傳教軸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이다. “【日省錄】執義沈奎魯、掌令南惠寬啓曰: ‘臣等俱以無似, 忝叨見職, 一事緘默, 恒切愧惡. 卽伏見夜下持平權文度疏批, 以監臺事, 無一言糾正, 大失臺體, 致煩特推之命, 臣等相顧惶慄, 靡所容措. 噫! 夜禁一事, 寔有關於春秋大義理, 則爲今日臣子者, 孰敢冒犯, 而況彼臺監, 職在掌憲, 尤宜自別. 且值動駕, 縱隸犯禁, 事甚驚駭. 宜卽糾正, 而矇未覺察, 尚稽至此, 臣等不職之失, 於是益著矣, 其何敢一刻晏然於臺次乎! 請命遞斥臣等之職.’ 答曰: ‘勿辭, 亦勿退待.’” 이 피혐계사

□승정원일기□에 기록된 피험계사는 논핵계사나 처치계사와는 달리 대부분 서두, 본문, 말미가 모두 기록되어 있다. 다만 본문의 경우에는 내용을 전부 기록하지 않고 축약하여 기록한 사례가 일부 보인다.<sup>89)</sup> 대간들은 국왕의 질책을 받거나 다른 관원의 탄핵을 받은 경우, 또는 동료 대간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업무상 실수를 저지른 경우 등에 피험계사를 올려 자신이 대간의 직무를 계속 수행해도 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公論에 의한 심판을 받아 거취를 정하였다.<sup>90)</sup>

대간이 피험계사를 올릴 때에는 단독으로 올리기도 하고 여러 명이 연명으로 올리기도 하였다.<sup>91)</sup> 그리고 대간이 臺廳에 나와서 傳啓할 때와 입시하여 榻前에서 전계할 때에 따라 피험계사를 올리는 절차가 달랐다. 대간이 臺廳에 나와서 傳啓할 경우에는 피험하는 당사자가 집이나 臺廳에서 피험계사의 초본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sup>92)</sup> 대간이 입시하여 傳啓하던 도중에 실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피험계사를 올렸다.<sup>93)</sup>

피험계사에 대한 국왕의 처분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다. 첫째는 ‘사직하지 말고 물러나서 물론을 기다리지도 말라.[勿辭, 亦勿退待]’라고 답하는 것이다.<sup>94)</sup> 이러한 비답은 국왕이 피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것이다. 대간이 입시 전계를 하다가 이러한 비답을 받은 경우에는 물러나가지 않고 傳啓를 계속 진행하였다.<sup>95)</sup> 둘째는 ‘사직하지 말고 물러나서 물론을 기다리라.[勿辭, 退待物論]’라고 답하는 것이다.<sup>96)</sup> 피험한 대간에게 物論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대간이 出仕하도록 판정할지 遞差하도록 판정할지를 기다리라는 의미로, 公論에 따라 피험한 대간의 거취를 정하도록 한 것이다.<sup>97)</sup> 셋째는 ‘사직하지 말라.[勿辭]’라고만 답하는 것이다.<sup>98)</sup> 이처럼 대간의 피험계사에 대한 비답에 ‘물러나서 物論을 기다리라.’라는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승정원이 국왕에게 ‘물러나서 物論을 기다리게 하겠습니다.’라고 아뢰었다.<sup>99)</sup> 대간이 입시 전계를 하다가 이러한 비답을 받은 경우에는 승지에게 ‘물러나서 物論을 기다리게 하겠다고 아뢰어 주시오.’라고 말을 하면, 승지가 국왕에게 ‘대간 아무개가 하루에 재차 피험계사를 아뢰는 것은 번거롭게 해드리는 일이므로 물러나서 物論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아뢰었고, 이에 대해 아뢴 대로 하라는 국왕의 비답을 받

는 □승정원일기□ 정조 23년 8월 24일에 동일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

89) □승정원일기□ 인조 8년 7월 17일, “掌令兪省曾、持平沈演避嫌大概:‘大臣之回啓, 臺諫之進言, 不但威而拒之, 又從而尋其根, 臣等寧死於鈇鉞之下, 不敢奉行, 以益殿下之過, 請遞斥。’”

90) □승정원일기□ 효종 즉위년 9월 22일, “臣於三昨, 伏承聖批, 酷似檢人, 亂人家國等語爲教, 臣驚惶戰灼, 措躬無地。”; □승정원일기□ 인조 21년 3월 22일, “臣等卽見大司憲李蔡引避之辭, 則有忝長風憲, 顯被指斥等語。閱應亨請對時, 雖學長官之名, 而顧其風憲之任, 則臣等亦何異焉!”; □승정원일기□ 인조 3년 7월 20일, “今此李佑之事, 兩司俱發, 方請遠竄, 而時無停啓之意, 則停與不停, 待同僚出仕之後議處未晚, 城上所, 以自己之見, 徑先停啓, 臣之罷軟, 不能有無於同僚, 於此可見。”; □승정원일기□ 정조 4년 11월 24일, “百爾思量, 實難冒參, 莫重合辭, 緣臣而今日闕啓, 臣罪至此, 益無所逃, 何敢一刻踰據於臺次乎! 請命遞斥臣職。”

91) <그림-8>과 주) 88 참조. □승정원일기□ 영조 3년 11월 28일, “掌令權孚、正言鄭羽良聯名避嫌啓曰。”

92) □승정원일기□ 인조 9년 윤11월 12일, “政院啓:‘凡臺諫啓辭, 與同僚完議構草後詣闕, 而至於自己避嫌, 則或在家起草, 至臺廳改書, 或思量措語, 至臺廳起草, 初無規例矣。’傳曰:‘知道。 避嫌啓辭, 在家起草以來, 乃是常情也。’”

93) □일성록□ 정조 17년 3월 10일, “光履等避嫌以爲:‘臣等年紀摧頽, 言議異軟, 清朝耳目, 本不近似, 賓對有命, 冒沒登筵, 未效一日之責, 至被特推之命。 以此情踪, 其何可晏然臺次乎! 請命遞斥。’”

94) □승정원일기□ 정조 6년 6월 21일, “司諫尹長烈啓曰:‘… 請命遞斥臣職。’ 答曰:‘勿辭, 亦勿退待。’”

95) □銀臺便攷□ 兵房攷 次對, “如承勿辭亦勿退待之命, 則仍奏啓辭, 而臺諫如無進參之負, 則承旨請推。”

96) □승정원일기□ 영조 22년 12월 27일, “正言尹光纘避嫌曰:‘… 請命遞斥臣職。’ 答曰:‘勿辭, 退待物論。’”

97) 이처럼 公論에 의한 판정을 處置라고 하는데, 처치에 대해서는 ‘처치계사’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98) □승정원일기□ 영조 14년 7월 28일, “正言李壽海啓曰:‘… 請命遞斥臣職。’ 答曰:‘勿辭。’”

99) □銀臺便攷□ 刑房攷 避嫌, “避嫌批答, 無勿退待之命, 則本院以退待物論之意, 啓辭。”

으면 해당 대간은 즉시 물러나갔다.<sup>100)</sup> 만약 대간이 ‘사직하지 말라.’라는 비답을 받고도 아뢰어 달라고 청하지 않으면 승지가 해당 대간에 대해 추고할 것을 청하였다.<sup>101)</sup> 대간이 臺廳에 나아가서 피혐계사를 전한 뒤에 이러한 비답을 받은 경우에는 臺廳에서 승지에게 ‘물러나서 물론을 기다겠습니다.’라고 구두로 보고하면, 승지가 국왕에게 ‘대간 아무개가 하루에 재차 피혐계사를 아뢰는 것은 번거롭게 헤드리는 일이므로 물러나서 物論을 기다리게 하였습니다.’라고 보고하였다.<sup>102)</sup> 넷째는 피혐계사에서 청한 대로 윤택하는 것이다.<sup>103)</sup> 즉 동료 대간이나 옥당이 처치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국왕이 대간의 遞差나 罷職을 곧바로 허락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간이 피혐계사를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대간의 言行에 대해 공정한 심판을 내려 해당 대간의 거취를 결정하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공론 정치의 일면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의도와는 달리 피혐계사를 빈번하게 올림으로써 생기는 폐해도 많았으므로, 피혐하는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기도 하였다.<sup>104)</sup>

### 3. 處置 啓辭

處置啓辭란 避嫌한 대간에 대해 정당성 여부를 판정하여 出仕하도록 청하거나 遞差하도록 청하는 내용으로 올리는 계사를 가리킨다.<sup>105)</sup> 處置는 정상적으로 공무를 행하는 대간이나 옥당이 대간의 피혐계사에 근거해서 해당 대간의 행위가 정당하여 체차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면 出仕시키기를 청하고 해당 대간의 행위가 부당하여 체차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遞差하기를 청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러한 내용으로 올리는 계사를 처치계사라고 하였다.<sup>106)</sup> 實錄에서는 이러한 내용의 처치계사가 □선조실록□에 처음 보인다.<sup>107)</sup>

100) □銀臺便攷□ 兵房攷 次對, “臺諫避嫌, 只承勿辭之命, 則臺諫謂承旨曰:‘請奏退待。’ 承旨奏請退待。【奏曰:‘某臺某一日再啓煩瀆, 退待勿論, 何如?’ 若承依爲之之批, 則臺諫即退出。】”; □승정원일기□ 효종 8년 3월 24일, 정조 즉위년 9월 21일.

101) □銀臺便攷□ 兵房攷 次對, “若不請退待, 則亦請推。【奏曰:‘某臺某避嫌, 既承勿辭之批, 而不請退待, 直爲出去, <或又爲傳啓。> 有損臺體, 推考何如?’】”

102) 영조대 □弘文館志□ 式例 第6 處置式, “避嫌該官, 於臺廳承旨傳批之時, 口報于承旨曰:‘退待物論。’ 該房承旨例以口傳啓曰:‘某官某再啓煩瀆, 退待物論矣。’ 此所謂退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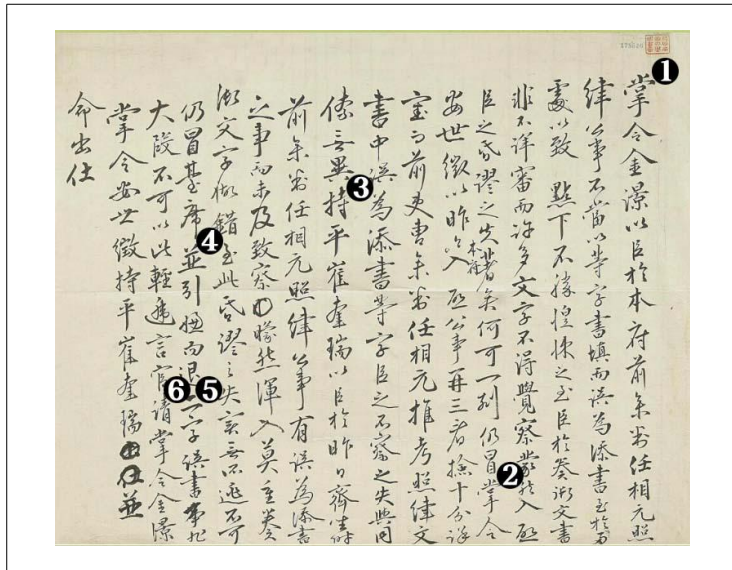
103) □승정원일기□ 순조 5년 5월 22일, “執義高宅謙啓曰:‘... 請命遞斥臣職。’ 答曰:‘既曰非無罪橫羅, 又曰獨臺元無不出禁之古例, 其所謂不能審慎綜核於格例者, 又何事也! 爾則遞差。’”

104) 星湖 李瀾은 대간의 폐해 중 대간들이 거리낌 없이 형식적으로 피혐하는 폐해를 지적하고 이러한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였고, 礪溪 柳馨遠은 번거롭게 政事를 여는 원인은 대간이 자주 체차되기 때문이고 대간이 자주 체차되는 원인은 피혐하는 제도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역시 폐지할 것을 주장하였다. □星湖先生全集□ 卷45 雜著 論諫官; □礪溪隨錄□ 卷13 任官之制 追贈; □승정원일기□ 영조 12년 12월 7일, “臣且伏念我國避嫌之規, 此實古所未有之謬例, 而先正臣文成公李珣之所嘗疏陳其弊者也。”

105) 영조대 □弘文館志□ 式例 第6 處置式, “僚臺中無故者據其引避之辭, 定其立落, 以啓辭上請, 【如云理直而被斥不當遞, 請某官某出仕, 卽所謂立也; 理曲當遞, 請某官某遞差, 卽所謂落也。】 此所謂處置。”

106) 위와 같은. 피혐한 대간을 처치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대간 중 城上所의 임무이지만, 실제로는 공무를 행하는 대간이나 옥당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승정원일기□ 숙종 29년 11월 4일, “第本府定規, 持平、掌令, 例爲城上所, 凡於連啓、處置, 皆城上所之任也。”

107) □선조실록□ 13년 9월 3일(경오), “持平洪汝諄避嫌啓曰:‘臣處置大司憲李拭之際, ... 茲請李拭出仕矣。’”; □선조실록□ 18년 6월 25일(갑자), “大司憲具鳳齡等啓曰:‘... 臺諫遞代, 事體極重, 豈可以此輕遞言官, 以增騷擾之弊乎? 請大司諫崔滉以下并命出仕。’” 송응섭은 피혐한 대간을 국왕이 처치하다가 대간과 옥당이 처치하는 것으로 변화하는 시점을 선조 연간 이후로 보았다. 송응섭, 앞의 논문 177쪽 참조.



<그림-9> 1685년(숙종 11) 처치계사<sup>108)</sup>

<그림-9>는 1685년(숙종 11)에 司憲府에서 올린 처치계사의 초본으로, 피혐한 掌令 金滌·安世徵과 持平 崔奎瑞에 대해 모두 出仕하게 할 것을 청하는 내용이다. 이 처치계사의 초본에는 계사를 올린 司憲府 관원의 職名과 姓名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처치계사의 본문 내용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앞부분에 해당하는 ①은 掌令 金滌의 피혐계사, ②는 掌令 安世徵의 피혐계사, ③은 持平 崔奎瑞의 피혐계사를 각각 인용한 것이고, 뒷부분에 해당하는 ④는 세 사람이 모두 혐의를 내세워 모두 물러났음을 뜻하는 ‘竝引嫌而退’를 기록한 것이고, ⑤에는 세 사람의 행위에 대한 司憲府의 평가가 기록되어 있다. 말미에 해당하는 ⑥에는 ‘請’ 자로 시작하여 세 사람의 出仕를 청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승정원일기□에 기록된 처치계사는 피혐한 대간의 피혐계사를 앞부분에 인용하여 기록하기도 하고 생략하기도 하였는데, 피혐한 대간이 복수일 경우에는 피혐계사를 모두 인용하거나 생략한 뒤에 ‘모두 혐의를 내세우며 물러갔습니다.[竝引嫌而退]’라고 기록하였고, 피혐한 대간이 단수일 경우에는 피혐계사를 인용하거나 생략한 뒤에 ‘혐의를 내세우며 물러갔습니다.[引嫌而退]’라고 기록하였다.

피혐한 대간에 대해 처치하는 시기는 피혐계사가 申時 이전에 도착하면 당일치 처치하고 申時 이후에 도착하면 국왕에게 물어본 뒤에 처치하거나 그 다음날 처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sup>109)</sup> 그리고 齋戒하는 날에도 피혐계사와 처치계사를 올리는 것은 구애받지 않았다.<sup>110)</sup>

108)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 규장각 소장 178526, 啓文草啓文, 가로 67cm이고 세로 54cm이다. “掌令金滌, 以臣於本府前參判任相元照律公事, 不當以等字書填, 而誤爲添書, 至於兩處以致點下, 不勝惶悚之至。 臣於奏御文書, 非不詳審, 而許多文字, 不得覺察, 蒙然入啓, 臣之昏謬之失著矣, 何可一刻仍冒!” 掌令安世徵, 以昨日本府入啓公事, 再三看檢, 十分詳審, 而前吏曹參判任相元推考照律文書中, 誤爲添書等字, 臣之不察之失, 與同僚無異。’ 持平崔奎瑞, 以‘臣於昨日齊坐時, 前參判任相元照律公事, 有誤爲添書之事, 而未及致察, 矇然渾入, 莫重奏御文字, 做錯至此, 昏謬之失, 實無所逃, 不可仍冒臺席。’ 並引嫌而退。 二字誤書, 事非大段, 不可以此輕遞言官。 請掌令金滌、掌令安世徵、持平崔奎瑞, 竝命出仕。” □승정원일기□ 숙종 11년 8월 5일 기사에 위 세 사람의 피혐계사가 동일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고, 다음날인 6일의 기사에는 사헌부의 기사 중 논핵계사 뒤에 이 처치계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세 사람의 피혐계사는 생략하고 처치계사 중 ‘竝引嫌而退’ 이하의 세 관원을 평가한 내용과 말미의 ‘請’ 자 이하 부분만 기록되어 있다.

109) 영조대 □弘文館志□ 式例 第6 處置式, “避草申前來, 則當日爲之; 申後來, 則翌日爲之, 而國有事, 不拘常規, 雖

피험한 대간에 대해 처치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첫 번째 방식은 피험한 대간이 소속된 관사에서 처치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식은 사간원의 피험한 대간에 대해 사헌부가 처치하거나 사헌부의 피험한 대간에 대해 사간원이 처치하는 것이며, 세 번째 방식은 兩司의 피험한 대간에 대해 홍문관이 처치하는 것이다.<sup>111)</sup> 첫 번째 방식은 피험한 대간이 소속된 관사 안에 정상적으로 공무를 행하는 대간이 있을 경우에 처치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 방식은 피험한 대간이 소속된 관사 안에는 정상적으로 공무를 행하는 대간이 없고 兩司 중 다른 관사에 정상적으로 공무를 행하는 대간이 있을 경우에 처치하는 방식이며, 세 번째 방식은 兩司에 모두 정상적으로 공무를 행하는 대간이 없을 경우에 처치하는 방식이다.<sup>112)</sup> 피험한 대간을 兩司에서 처치할 경우에는 啓辭를 올렸으나, 홍문관이 처치할 경우에는 劄子를 올렸다.<sup>113)</sup> 入侍하여 傳啓하다가 玉堂도 대간과 함께 피험하고 물러나면, 玉堂을 새로 차출하여 피험한 대간들을 처치하도록 하였다.<sup>114)</sup>

처치하는 절차는 동료 대간이 피험하면 정상적으로 공무를 행하는 대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상의한 뒤에 처치계사를 작성하거나, 해당 대간의 피험계사를 가지고서 長官이나 亞長에게 찾아가서 상의하고 다른 동료에게는 簡通을 보내 통지한 뒤에 처치계사를 작성하는 순서로 이루어졌다.<sup>115)</sup> 처치할 때에는 대간들이 피험한 사안에만 근거하여 遞差하도록 청할지 出仕하도록 청할지를 정하였다.<sup>116)</sup> 피험한 대간에 대해 처치할 때에도 相避를 적용하였으며, 자신을 무시한 대간에 대해 처치해야 할 경우에는 처치하지 않고 피험하였다.<sup>117)</sup>

피험한 대간에 대해 出仕시킬 것을 청하는 처치계사를 올려 국왕의 허락을 받고 나면, 승정원이 해당 피험한 대간을 牌招한 뒤에 승지가 臺廳에 나아가서 해당 대간에게 就職하도록 통보하였다.<sup>118)</sup> 피험했던 대간이 처치를 받아 出仕하게 되면 이 사실을 朝報에 반포하였다.<sup>119)</sup>

夜深, 只入番爲之。”;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8월 10일, “兩司多官, 避嫌退待, 本館當爲處置, 而日勢已暮, 在家僚員, 齊會構草之際, 勢有未及。明日待開門處置, 何如?”; □승정원일기□ 숙종 2년 3월 7일, “今後則除有公故時及避嫌處置外, 必趁申前傳啓事, 更捧承傳, 使兩司粘諸臺廳壁上, 各別惕念遵行, 而若或申後傳啓, 則自本院臨時啓稟後, 以爲捧入之地, 何如?”

110) □銀臺便攷□ 刑房攷 避嫌, “兩司避嫌, 雖齋日捧入。”; □銀臺便攷□ 刑房攷 處置, “處置牌招, 則勿拘齋日。【每日一次牌招】”; □六典條例□ 吏典 司憲府 臺體, “避嫌及處置, 不拘齋日, 而兩司不備, 則玉堂處置。”

111) 영조대 □弘文館志□ 式例 第6 處置式, “如憲府官員引避, 憲僚中無故者處置; 若憲僚皆有故, 或皆有引嫌之事連次避嫌, 則諫院官員無故者處置; 而若諫僚皆有故, 或皆有引嫌之事連次避嫌, 則兩司避嫌, 都送于本館, 本館筭請立落, 謂玉堂處置。”; □銀臺條例□ 刑攷 臺諫, “避嫌批答, 只承勿辭, 無勿退待之命, 則承旨稟旨, 退待物論, 而處置【各自該司爲之, 有故, 則兩司互相處置; 竝有故, 則玉堂處置。】後, 牌招出仕。”; □六典條例□ 吏典 司憲府 臺體, “處置之規, 有本司同臺, 則本司請牌, 如無同臺, 兩司互相移送, 而違牌, 則移送玉堂, 至申後, 還送本司, 不得經夜。”

112) 위와 같음.

113) □광해군일기□ 10년 12월 26일(신사), “弘文館啓曰: ‘… 凡處置之際, 長官完議許文, 則下官書劄子呈政院, 乃是舊例。’”

114) □승정원일기□ 정조 4년 8월 15일, 有防曰: ‘諸玉堂, 一時起伏於臺諫避嫌, 故不得請罪諸臺矣。’ 上命有防書傳教曰: ‘以此以彼, 所失大矣, 入侍玉堂, 一並遞差。’ 昌聖曰: ‘玉堂上下番俱空, 臺諫處置, 亦不可經宿, 政官卽爲牌招, 有闕之代, 開政差出, 何如?’ 上曰: ‘依爲之。’”

115) □승정원일기□ 현종 3년 9월 10일, “同僚引避, 則處置之際, 城上所必持避嫌啓草, 就于長官或亞長家, 相議構草以啓者例也。”

116) □승정원일기□ 효종 3년 7월 4일, 현종 2년 12월 17일, 영조 5년 9월 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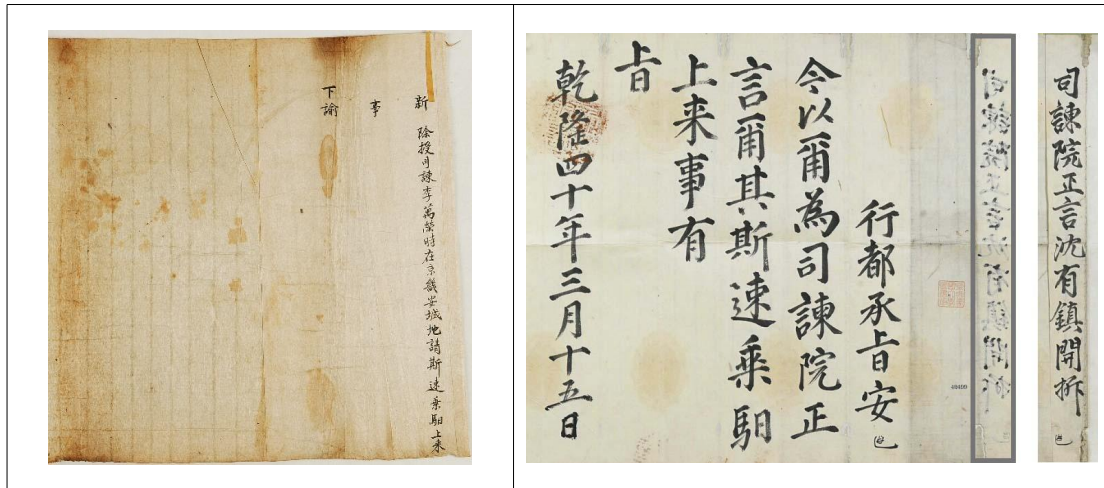
117) □승정원일기□ 효종 7년 4월 21일; □승정원일기□ 효종 9년 8월 25일.

118) □銀臺便攷□ 刑房攷 處置, “處置啓辭, 以依啓批下, 則自本院出仕啓辭爲之。【臺諫承牌入來, 承旨詣臺廳相揖後, 承旨曰就職, 臺諫曰出仕。】”

119) □政院故事□ 刑攷 臺諫, “臺諫處置出仕承牌, 以某官就職, 卽出朝報事, 下教。【甲寅正月初十日】”

#### 4. 下諭 啓辭

下諭啓辭란 지방에 있는 대간에게 속히 올라오도록 下諭할 것을 청하는 啓辭를 가리킨다. 새로 제수된 대간이 지방에 있거나 휴가를 받아 지방에 내려갔거나 왕명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에 내려간 대간에게 속히 올라오라고 지시할 때에는 兩司에서 啓辭를 올려 국왕의 허락을 받은 뒤에 이들에게 속히 올라오라고 下諭하였다.<sup>120)</sup> 지방에 있는 대간에게 下諭할 때에는 승정원에서 그 내용을 有旨로 작성하여 내려 보냈다.<sup>121)</sup>



<그림-10> 1799년(정조 23) 하유계사<sup>122)</sup>

<그림-11> 1775년(영조 51) 沈有鎮 有旨<sup>123)</sup>

<그림-10>은 새로 司諫에 제수된 李萬榮에게 속히 역말을 타고 올라오라고 下諭하기를 청하는 계사의 정본이다.<sup>124)</sup> 이 하유계사는 □승정원일기□ 정조 23년 8월 9일에 正言 權心彦이 올린 啓辭 중 일부로 이 내용과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 하유계사는 다른 계사에 비

120) □승정원일기□ 인조 4년 6월 24일, “大司諫李顯英, 以餞慰使, 今在開城府, 竣事之後, 斯速乘駟上來事, 請下諭, 依例院書吏, 給馬下送.”; □승정원일기□ 순조 9년 5월 16일, “上曰:‘如未上來, 當爲下諭乎?’ 宗薰曰:‘當先出牌, 知其在外, 然後爲下諭啓辭矣.’”

121) 대간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다른 관원에게 下諭할 때에도 승정원에서 有旨를 작성하여 보냈다. 다만 大臣에게 下諭할 때에는 史官 등을 보내 직접 傳諭하도록 하였고, 閣臣에게 下諭할 때에는 奎章閣에서 有旨를 작성하여 보냈다. 관원을 부를 때 발급하는 諭書와 有旨에 대해서는 노인환의 「조선시대 諭書 연구」(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09), 108~110쪽 참조. □銀臺便攷□ 吏房攷 政官, “新除授吏曹判書在外, 則自該曹啓目下諭。【啓目下後, 有旨本院成送。】”; □銀臺便攷□ 吏房攷 注薦, “落點後請牌, 若在外, 則下諭啓辭。”; □銀臺便攷□ 吏房攷 大臣, “丁酉十月十六日, 瑤源殿奉審大臣處, 有下諭之命, 本院以‘大臣處, 例爲傳諭, 無下諭之例。’入稟, 以令地方官傳諭, 更爲命下。”; □銀臺便攷□ 吏房攷 卜相, “新拜大臣在外, 則上來事, 遣史官傳諭。【給馬事, 本道監司處, 一體下諭。】”; □銀臺便攷□ 吏房攷 文衡會圈, “時有舉行之事, 而新除授大提學若在外, 則本院下諭啓辭。”; □銀臺便攷□ 禮房攷 勅使, “甲辰遠接使, 以前勅伴送使, 仍差留待灣府上, 而本院啓辭, 仍留灣上事, 下諭。”; □政院故事□ 吏攷 通行雜式, “自內閣下諭之有旨祇受狀啓, 則以下內閣判付, 各房知悉舉行, 備忘記。【辛丑三月二十八日】”

122) 한국학자료센터 영남권역센터(<http://yn.ugyo.net>),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안동 하회 풍산류씨 화경당, 1799년 8월 9일자 注書 柳台佐가 편철해 놓은 傳敎軸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이다. “新除授司諫李萬榮, 時在京畿安城地, 請斯速乘駟上來事, 下諭。”

123)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 규장각 소장 42499, 沈有鎮 有旨, 가로 58cm이고 세로 52cm이다.

124) 하유계사의 초본은 확인하지 못하였고, 정본도 이 문서가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해 그 형식이 정형화되어 있고 내용도 간략하다. 즉 하유계사의 형식은 下諭할 대상에 따라 職名, 姓名, 所在地만 바꾸어 쓰면 되도록 정형화되어 있고, 그 내용도 ‘대간 아무개가 현재 某處에 있으니 속히 역말을 타고 올라오라고 下諭하소서’라는 것으로 통일되어 있다.<sup>125)</sup> <그림-11>은 새로 司諫院 正言에 제수된 沈有鎭에게 속히 역말을 타고 올라오라고 下諭하는 내용의 有旨이다. 맨 앞부분에는 수신자와 발신자가 기록되어 있다. 즉 수신자 사간원 정언 심유진이 개봉하라는 내용인 ‘司諫院正言沈有鎭開拆(着名)’과 발신자 行都承旨 安兼濟의 職名과 姓인 ‘行都承旨安(着名)’이 적혀 있고, 각각 그 밑에 安兼濟의 手決이 기재되어 있다. 본문은 “‘이제 그대를 사간원 정언으로 삼으니, 그대는 속히 역말을 타고 올라오라.’라는 내용의 유지를 보냄[今以爾爲司諫院正言, 爾其斯速乘駟上來事, 有旨.]”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즉 승정원에서 영조의 下諭 내용을 인용하여 有旨를 작성해서 보낸 것이다. 끝 부분에는 有旨를 작성한 시기인 ‘건륭 40년 3월 15일’이 기록되어 있고, 淸나라 年號인 ‘乾隆’ 부근에 승정원의 官印인 ‘承政院印’이 찍혀 있다.

위 有旨의 수신자인 沈有鎭은 영조 51년(1775) 3월 12일에 司諫院 正言에 제수되었다.<sup>126)</sup> 그로부터 3일 후인 3월 15일에 입시한 자리에서 執義 南絳老가 다음과 같이 하유계사를 아뢰었다.

새로 除授된 持平 吳大益은 현재 平安道 平壤에 있고, 司諫院 大司諫 韓光肇는 현재 忠淸道 洪州에 있으며, 正言 沈有鎭은 현재 京畿 坡州에 있으니, 모두 속히 역말을 타고 올라오라고 下諭하소서.<sup>127)</sup>

위의 하유계사에 대해 영조는 ‘아뢰 대로 하라.[依啓]’라고 윤허하였다.<sup>128)</sup> 이에 따라 승정원에서는 같은 날 <그림-11>의 有旨를 작성해서 보낸 것이다. 이처럼 하유계사는 兩司에서 지방에 있는 대간에게 속히 역말을 타고 올라오라고 下諭하기를 청하는 계사이고, 이에 대해 국왕의 허락을 받으면 당사자에게 有旨를 작성하여 보냈음을 알 수 있다.

새로 제수된 대간 이외에 말미를 받아 지방에 내려간 대간에게 속히 올라오도록 下諭하기도 하였다. 대간이 말미를 받아 지방에 내려갈 경우에는 하루에 이동하는 거리를 80리씩 계산하고 머무르는 기간을 7일로 계산하였으며, 속히 올라오도록 下諭한 뒤에도 대간이 기한이 지나도록 올라오지 않으면 승정원에서 啓辭를 올렸다.<sup>129)</sup> 下諭한 뒤에 기한이 지나도록 올라오지 않은 대간은 의금부에 내려 推考하였는데, 이때에는 遞差傳旨와 禁推傳旨를 같이 들여보냈다.<sup>130)</sup>

125) 하유계사의 형식과 내용을 다른 문서로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승정원일기□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가 있다.

126) □승정원일기□ 영조 51년 3월 12일, “沈有鎭爲正言。”

127) □승정원일기□ 영조 51년 3월 15일, “新除授持平吳大益, 時在平安道平壤地, 司諫院大司諫韓光肇, 時在忠淸道洪州地, 正言沈有鎭時在京畿坡州地, 請竝斯速乘駟上來事, 下諭。”

128) □승정원일기□ 영조 51년 3월 15일.

129) □銀臺便放□ 刑房放 下諭, “臺諫下諭後, 過限不上來, 自本院啓辭。【無論遠近道, 一日八十里式除往還, 留七日。】”

130) □銀臺便放□ 刑房放 臺諫, “臺諫三牌不進及過限不上來, 禁推、遞差傳旨同爲捧入時, 只下禁推分揀之教, 而不下遞差傳旨, 則兩司去來, 以遞差傳旨未下書入, 若只遞差傳旨踏下, 而禁推傳旨不下, 隨即提稟, 而廳坐入啓者, 申後微稟, 申後又不下, 則明朝更爲提稟。【已巳五月十六日入侍時, 參贊官朴宗薰筵奏定式。】”; □銀臺便放□ 刑房放 下諭, “遞差傳旨及禁推傳旨與啓辭同爲入徹, 禁推傳旨, 以前某官書之, 山林、臺諫, 不在此例。”; □승정원일기□ 영조 36년 9월 14일, 순조 9년 5월 16일.



#### IV. 臺諫 啓辭의 전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양사는 각각 매일 국왕에게 啓辭를 올릴 의무가 있었는데, 이처럼 양사의 대간이 국왕에게 啓辭를 전달하는 것을 傳啓라고 하였다.<sup>131)</sup> 傳啓는 중국에는 없던 우리나라 고유의 제도로 조정의 公論을 국왕에게 전달하는 장치로 인식되었다.<sup>132)</sup> 아래에서는 양사가 전제하는 방식을 詣臺傳啓와 入侍傳啓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한다.<sup>133)</sup>

##### 1. 詣臺 傳啓(臺廳 傳啓)

詣臺 傳啓란 양사의 대간이 쉼 안의 臺廳에 나와서 대간 계사를 국왕에게 올리기 위해 승지와 주서 및 승전색에게 전하는 것을 가리키며, 臺廳 傳啓라고도 하였다. 양사의 대간이 대청에 나와서 계사를 전달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口銀臺條例口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양사의 대간은 매일 쉼문이 열리기를 기다려 臺廳에 나아가 양사의 습啓 및 사헌부의 前啓와 사간원의 前啓를 전하고, 또 옥당과 함께 三司의 습啓를 전하되, <습啓는 3更이 지나면 傳啓하지 못한다. ○ 大臣, 國舅, 宗親, 儀賓, 山林을 聲討할 때에는 삼사가 연명으로 계사를 올린다.> 한 관사만 臺廳에 나아왔을 때에는 해당 관사의 前啓만 전한다. <한 관사의 前啓는 未時가 지나면 傳啓하지 못한다.> 傳啓할 때에는 승지와 사관이 臺廳에 나가서 맞이하여 계사를 받아 온 뒤에 주서가 정서하되, <新啓는 앞부분에 찌지를 붙이고, 추가하거나 말소한 곳에는 옆 부분에 찌지를 붙인다.> 낮에는 時를 써넣고 밤에는 更을 써넣어 승전색을 통해 임금의 재가를 받기 위해 들여보내고, 비답을 내려 주면 승지와 사관이 또 臺廳에 가서 비답을 전해 준다. <원래의 계사는 도로 봉하여 들이고 新啓는 잘라서 傳敎軸에 붙인다. ○ 승정원에 있는 승지가 모두 대간의 계사에서 거론한 사안과 관련된 혐의가 있으면 臺廳에 나가서 맞이하지 않고 사관만 나아가되, 계사는 대간이 스스로 써서 직접 승전색에게 전한다.> 어떠한 계사든 간에 모두 하루에 재차 계사를 올리지 못한다.<sup>134)</sup>

131) 양사가 대간 계사를 전할 때에는 승지와 주서 및 승전색에게 啓辭를 전하여 간접적으로 국왕에게 전달하도록 하지만, 대간 계사가 최종적으로 전달되는 곳은 국왕이기 때문에 傳啓의 대상은 국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대간이 입시하여 국왕에게 직접 계사를 전할 경우에도 똑같이 傳啓라는 말을 사용하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조선 전기의 實錄에 보이는 傳啓는 대부분 신하가 아뢴 말을 內官이나 승지 등이 대신 국왕에게 전하는 것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口태종실록口 7년(1407) 7월 25일(병자), “代言李承幹不能傳啓, 至等乃退.”; 口세종실록口 25년(1443) 1월 3일(기미), “遂下傳旨曰:‘無取旨無言辭公事, 令司謁傳啓.’”; 口중종실록口 9년(1514) 1월 27일(신묘), “在成宗朝, 大事則承旨親啓, 小事則令宦官傳啓.”

132) 口승정원일기口 정조 19년 8월 1일, “臣聞三代之盛, 工執藝事以諫, 而別無諫官之名矣。漢時始有御史大夫諫議之官, 然只令周旋禁闈, 以補君德之闕遺, 以論廷臣之賢邪而已, 未聞以治逆之責, 任之於諫官也。我朝制度, 有無於古而自行於國中永久而不廢者, 卽臺臣傳啓之例耳。”

133)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口승정원일기口(<http://sjw.history.go.kr>)를 검색한 결과 ‘詣臺傳啓’는 102건이 보이고 ‘入侍傳啓’는 72건이 보인다. 詣臺傳啓의 다른 표현인 臺廳傳啓는 53건이 보이고, 入侍傳啓의 다른 표현인 榻前傳啓는 10건이 보인다. 검색일 : 2014년 2월 22일.

134) 口銀臺條例口 刑放 臺諫, “兩司每日待開門詣臺, 傳合啓及府、院前啓, 又與玉堂傳三司合啓, 【過三更, 不得傳。○ 大臣及國舅、宗親、儀賓、山林聲討, 三司聯啓。】 一司詣臺時, 只傳該司前啓。【過未時, 不得傳。】 傳啓時, 承史出接臺廳受來, 注書正書, 【新啓付頭籤, 添入、抹去處付傍籤。】 晝則填時, 夜則填更, 以承傳色入啓, 批下, 承史又往傳批。【原啓, 還爲封入; 新啓, 割付傳敎軸。○ 在院承旨俱有嫌臺啓, 不爲出接, 只史官進去, 而啓辭, 臺諫自書, 直傳承傳色。】 竝不得一日再啓。”

위의 내용을 중심으로 예대 전계의 시기와 절차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대 전계를 행하는 시기는 평상시 매일이다. 여기에서 평상시라는 것은 국왕이 재계하는 기간이나 國恤 기간 등 視事하지 않는 시기를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국무를 수행하는 때를 가리킨다.<sup>135)</sup> 다만 평상시라도 양사의 대간이 입시할 일이 있을 경우에는 대청에서 전계하지 않고 입시하여 전계하였다. 양사가 매일 전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口銀臺便攷口와 口승정원일기口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sup>136)</sup>

둘째, 예대 전계를 행하는 구체적인 시각은 사헌부나 사간원 한 관사만 계사를 올리는 경우 未時나 申時까지, 양사나 삼사가 합동으로 올리는 계사의 경우 3更까지이다.<sup>137)</sup> 영조의 경우에는 午時 이전에 입시할 일이 있을 경우에는 대간이 입시하여 傳啓하고 입시할 일이 없으면 未時 이후에 傳啓하도록 하였다.<sup>138)</sup> 그렇게 보면 예대 전계는 未時에서 申時 사이에 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다고 할 수 있겠다. 사헌부와 사간원이 각각 단독으로 올리는 계사를 申時까지 전계하지 못하거나 습啓를 3更까지 전계하지 못할 때에는 ‘날이 저물어서 전계를 일시 중지한다.[日暮姑停]’라는 내용으로 양사에서 승정원에 통지하였다.<sup>139)</sup> 申時가 지날 때까지도 전계하지 않고 지연시킬 경우에는 처벌을 받았는데 초본 작성이 늦어져서 전계가 늦어지면 대간이 처벌을 받았고 정본 작성이 늦어져서 전계가 늦어지면 주서가 처벌을 받았다.<sup>140)</sup> 申時 이후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계하지 못하였다.<sup>141)</sup>

셋째, 예대 전계를 행하는 장소는 臺廳이다. 성종 때에는 대간이 승정원에 나와서 啓辭를 전달하였는데, 대간 한 사람이 와서 계사를 아뢴 경우에는 승정원의 문 안에 작은 床을 설치하고서 아뢰게 하였고, 습啓를 아뢴 경우에는 승정원 문 밖의 뜰에 자리를 마련하여 아뢰게 하였다.<sup>142)</sup> 이외에도 城上所나 朝房에서 대간 계사를 전달한 사례가 보이기도 하지만, 조선 후기에는 臺廳에서 전달하는 것이 원칙이었던 것으로 보인다.<sup>143)</sup>

넷째, 예대 전계를 행하는 자는 양사의 城上所이다. 앞에서 대간 계사의 작성에서도 살펴 보았듯이 성상소는 대간 계사를 작성하는 일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승지와 사관

135) 국왕이 視事하지 않는 시기에 대해서는 口銀臺便攷口 禮房攷 視事頃稟, 口銀臺條例口 禮攷 視事頃稟, 口六典條例口 吏典 承政院 啓稟月令 등에 자세히 실려 있어 참고가 된다.

136) 口銀臺便攷口 刑房攷 臺諫, “兩司每日詣臺傳啓, 而若不詣臺, 則以合辭闕啓, 每日請牌, 一司臺諫俱有故, 而只有一司, 無以合啓, 則監察代行茶時。”; 口승정원일기口 정조 10년 4월 20일, “雖非合辭之時, 行公臺諫之待漏詣臺逐日傳啓, 自是不易之常憲。”; 口승정원일기口 정조 21년 6월 16일, “臺閣舊列, 自大司憲兩司諸臺逐日詣臺傳啓, 若承旨仕進之規, 而如或有有故未入來者, 則以無城上所姑停矣。”

137) 獨啓의 경우 口은대조례口에는 未時까지라고 되어 있으나, 口은대편고口에는 申時까지라고 되어 있다. 口銀臺便攷口 刑房攷 臺諫, “合啓, 限三更爲之, 而既爲合辭, 則府院前啓一體爲之, 府院啓, 則限申時, 申後則出日暮姑停望。”

138) 口승정원일기口 영조 51년 8월 13일, “宅鎮曰:‘然則臺諫詣臺後, 午前有入侍, 則同爲入侍傳啓; 不得入侍, 則未時後捧入乎?’ 上曰:‘依爲之.’ 命詣臺臺臣, 午前入侍傳啓, 午后臺廳傳啓事。”

139) 口六典條例口 吏典 司憲府 詣臺, “合啓, 則三更以日暮姑停; 府院啓, 則申時以日暮姑停; 有長官無下臺, 以無城上所姑停。”

140) 대간 계사의 초본 및 정본 작성 참조.

141) 口승정원일기口 숙종 2년 9월 5일, “卽者憲府城上所就職後, 仍爲傳啓, 而申後不得傳啓事, 明有承傳, 頃日又爲傳教, 不當捧入之意, 再三往復, 則臺諫以爲, 有新啓, 必欲捧入, 臺閣啓辭, 事體重大, 且曾有臨時啓稟之教, 何以爲之? 敢稟。”

142) 이는 대간 계사를 구두로 전할 때의 일이다. 口성종실록口 22년 7월 30일(갑진), “承旨等承命, 或因議事, 或因赴宴在南廡, 而臺諫有啓事, 則必於庭中鋪席以待, 但臺諫一人來啓, 則於政院門內設小床以待之, 若合司來啓, 必於院門外庭, 大司憲以下列坐啓之, 若以旁人聽聞爲諱, 則院門外庭, 豈異於南廡前乎?”

143) 주) 134, 136 참조. 口銀臺便攷口 刑房攷 臺諫, “六承旨俱有嫌臺啓, 不得出接, 則臺諫自書直傳承傳色, 而史官則進去. … ○ 兩司啓辭, 以承傳色入啓. 【必詣臺爲之, 批下後, 詣臺廳傳批, 出去後, 則直爲分付.】”

및 승전색에게 전달하는 일도 담당하였다.<sup>144)</sup> 영조대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양사의 長官은 입시 전계 이외에 예대 전계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던 것으로 보인다.<sup>145)</sup> 다만 예대 전계라 하더라도 습啓에는 양사의 長官도 참여하였고, 성상소가 없을 경우에는 ‘성상소가 없으므로 전계를 일시 중지함[無城上所姑停]’이라는 내용으로 양사에서 승정원으로 통지하였다.<sup>146)</sup> 三司의 습啓를 전할 경우에는 玉堂도 臺廳에 나아가서 동참하였다.<sup>147)</sup>

다섯째, 예대 전계를 행하는 절차는 보통 세 단계로 나누어졌다. 첫 번째 단계는 양사의 대간이 승지와 사관을 臺廳으로 나오도록 청하여 계사를 전해주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승지와 사관이 대간 계사를 받아가서 정서하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정서한 대간 계사를 승전색에게 전하는 것이다. 다만 승지들이 모두 대간 계사의 내용과 관련된 혐의가 있어서 나오지 못할 경우에는 대간이 직접 승전색에게 계사를 전하였다.<sup>148)</sup>

여섯째, 예대 전계를 행할 때에는 三司의 습啓, 兩司의 습啓, 사헌부의 계사, 사간원의 계사 순서로 전계하였다.<sup>149)</sup>

일곱째, 대간 계사에 대한 국왕의 비답도 승지와 사관이 臺廳에 나가서 대간에게 전해주었다.

이상으로 예대 전계의 시기와 절차 등을 살펴보았다. 대간이 전한 계사는 승정원에서 마음대로 물리치지 못하였으며, 국왕의 명으로 물리칠 경우에도 언로를 막는다는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sup>150)</sup>

## 2. 入侍 傳啓(榻前 傳啓)

입시 전계는 君臣의 모임이 있어서 대간들도 함께 입시할 경우에 대간 계사를 榻前에서 국왕에게 직접 읽어 전하는 것을 가리키며, 榻前 傳啓라고도 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간 계사는 양사의 대간이 매일 臺廳에 나아가서 전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대간이 입시할 경우에는 榻前에서 직접 국왕에게 계사를 전하도록 예외를 둔 것이다. 대간이 榻前에서 국왕에게 직접 대간 계사를 전한 기록은 조선 전기의 실록에서도 보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제도로 정착한 것은 조선 후기인 인조 때부터인 것으로 보인다.<sup>151)</sup> 아래에서는 입시 전계의

144) □승정원일기□ 효종 2년 11월 6일, “自前合啓之時, 則兩司城上所, 俱詣臺廳, 一時傳啓, 例也。”

145) □승정원일기□ 영조 22년 11월 26일, “兩司之規, 長席, 則榻前入侍外, 本無詣臺傳啓之例, 雖或承牌入來, 仍即呈辭出去, 前啓則以無城上所姑停書出者, 蓋三百年故規然矣。” □승정원일기□ 영조 45년 11월 19일, “臺廳傳啓, 自是下僚之責, 至於長官, 則入侍之外, 元無詣臺傳啓之規。”

146) □銀臺便攷□刑房攷 臺諫, “兩司長官, 只參合啓, 而府院啓, 則以無城上所, 出姑停望。【若入侍, 則合啓與府院啓, 并爲之。】”

147) □銀臺便攷□刑房攷 臺諫, “三司會臺廳合辭時, 該房承旨詣臺廳啓辭, 史官仍於臺廳正書, 請承傳色入之。” □銀臺條例□刑房 臺諫, “兩司每日待開門詣臺, 傳合啓及府、院前啓, 又與玉堂傳三司合啓。”

148) 三司가 伏閣하였을 경우에는 승지가 臺廳에서 삼사의 伏閣啓辭를 작성하였다. 대간 계사의 정본 작성 참조.

149) □銀臺條例□에서는 三司의 습啓를 가장 마지막으로 거론하였으나, 입시하여 傳啓할 때의 순서와 □六典條例□에 기록된 전계 순서를 참고하면 詣臺 傳啓할 때에도 三司의 습啓가 있을 경우에는 가장 먼저 傳啓한 것으로 보인다. □六典條例□ 史典 司憲府 詣臺, “有三司合啓, 而玉堂不備, 傳兩司合啓, 【三司合啓姑停。】 有兩司合啓, 而諫院不備, 傳府啓。【兩司合啓姑停。】”

150) □승정원일기□ 정조 10년 1월 22일.

151) 대간이 문서로 계사를 올리기 시작한 중종 이후에도 입시하여 계사를 전한 기록이 □中宗實錄□과 □宣祖實錄□ 등에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제도로 정착한 것은 正言 李景奭의 건의에 따른 것으로, 李景奭이 正言으로 있던 시기가 인조 2년(1624)부터 3년 사이인 점으로 보아 인조 초기에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중종실록□ 38년 2월 17일(신묘), “前日經筵入侍時, 大司憲崔輔漢極諫大臣不勉國事。” □선조실록□ 6년 5월 6일(을유), “臣嘗忝史職, 入侍之際, 常聽其榻前之啓辭, 每有側媚逢迎之態, 已知其心術之不正。” □인조실록□ 2년 7월 12일(갑자), “李景奭爲正言。” □승정원일기□ 인조 3년 2월 4일, “李景奭爲正言。” □승정원일기□ 인조 3년 8월 20일, “獻

시기와 장소 및 절차와 방식 등을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입시 전계를 행하는 때가 언제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입시 전계는 국왕이 大臣과 備局堂上을 引見하는 次對, 君臣이 모여 經傳 등을 강론하는 經筵과 召對 등을 행할 때에 가능하였다.<sup>152)</sup> 次對는 매월 5.10.15.20.25.30일에 행하고, 經筵은 매일, 召對는 국왕의 명이 있을 때 수시로 행하도록 정해져있었으므로 이러한 의식이나 행사가 있을 때 대간이 입시하여 전계한 것이다.<sup>153)</sup> 그중 經筵은 하루에 朝講, 晝講, 夕講으로 나누어 행하였는데, 입시 전계는 주로 晝講에 행한 것으로 보인다.<sup>154)</sup> 이외에도 신하가 正殿의 정문에서 국왕에게 四拜禮를 행하는 朝參이 거행되거나 국왕의 명이 있을 경우에는 대간이 입시하여 전계하였다.<sup>155)</sup>

둘째, 입시 전계를 행하는 장소가 어디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입시 전계는 次對, 經筵, 召對, 朝參 등이 열릴 때 행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사나 의식이 열리는 장소에서 전계를 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朝參을 행하는 장소는 昌德宮의 경우 仁政門, 昌慶宮의 경우 明政門, 慶熙宮의 경우 崇政門 등 正殿의 정문으로 정해져있었다.<sup>156)</sup> 그 외의 경우는 장소가 일정하지 않아 국왕이 장소를 정해주거나 승정원에서 물어 정하였다.<sup>157)</sup>

셋째, 입시 전계를 행할 때에는 누가 전계하는 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입시 전계는 城上所가 행하는 예대 전계와 달리 양사의 長官이 행하되, 동참한 대간들은 長官과 함께 국왕 앞으로 나아가서 엎드려있고 장관이 새로운 사안을 아뢴 때마다 함께 일어났다가 다시 엎드렸다.<sup>158)</sup> 삼사의 長官이 모두 입시한 경우에는 大司憲이 三司의 합계를 아뢰었고, 대사헌이 참석하지 않거나 도중에 물러나면 大司諫이 三司의 합계를 아뢰었으며, 대사간이 참석하지 않거나 도중에 물러나면 副提學이 三司의 합계를 아뢰었고, 부제학이 참석하지 않거나 도중에 물러나면 執義가 三司의 합계를 아뢰었으며, 집의가 참석하지 않거나 도중에 물러나면 司諫이 三司의 합계를 아뢰었고, 司諫이 참석하지 않거나 도중에 물러나면 掌令이나 持平이 차례로 三司의 합계를 아뢰었다.<sup>159)</sup> 兩司의 승정도 양사의 대간이 위의 순서대로 아뢰고,

納李景奭啓曰, 臣前忝正言時, 以臺官來啓之時, 如值開筵, 一邊通于政院, 使之上達, 而直詣闕門外, 親啓於榻前之意, 陳啓蒙允矣。”

152) □銀臺便攷□刑房攷 臺諫, “詣臺臺諫若值講筵入侍時, 則詣閣外隨入之意, 微稟, 直爲入侍。【晝講, 則微稟隨入, 召對, 則不稟直爲隨入事, 丙午飭教。】”; □승정원일기□ 숙종 3년 1월 24일, “臺諫傳啓, 若與晝講相值, 則當依下教, 使之入侍論啓。… 今後臺諫詣臺, 若與晝講時相值, 則使之入侍論啓之意, 敢啓。”; □승정원일기□ 숙종 19년 1월 6일, “自前臺諫入侍之規, 備局堂上引見, 或晝講外, 別無入侍之時, 而今日本院, 以兩司多官處置事, 來詣臺廳, 傳啓政院, 則政院, 以守令引見相值, 使之入侍傳啓, 還給啓草, 故不得已入侍, 而此實會所未有之事。”

153) 次對는 매월 3차례씩 행하다가 숙종 24년(1698)부터 6차례씩 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銀臺便攷□ 禮房攷 經筵, “每日行, 常參, 經筵, 廳坐取稟, 翌日行之。朝講, 晝講, 夕講爲法講。… 召對, 不拘時, 因特教設行。”; □銀臺便攷□ 兵房攷 次對, “每月六次, 【初五、初十、十五、二十、二十五、三十日】 備邊司都提調以下堂上官及三司官各一員入對。【古例月三, 肅宗朝特命月六。○ 通編】”

154) 주) 152 참조.

155) 朝參은 매월 5.11.21.25일에 百官이 참석한 가운데 행하였다. □銀臺便攷□ 兵房攷 朝參, “每月初五日、十一日、二十一日、二十五日, 百官朝參。【通編 ○ 每月初一日、初七日、十七日、二十一日, 取稟。】”; □승정원일기□ 영조 9년 1월 5일, “上曰:‘朝參時, 例有臺啓耶?’ 趙明翼曰:‘臣未詳知, 當出往相考政院日記矣。’ 明翼因出往, 還爲進伏曰:‘考見己酉正月二十一日朝參日記, 則有臺啓矣。’”; □승정원일기□ 효종 7년 12월 26일, “尹鍊啓曰: ‘司諫院城上所, 以傳啓事, 來詣闕門外, 敢【一字缺】。’ 傳曰:‘入侍。’”

156) □銀臺便攷□ 兵房攷 朝參, “朝參處所, 昌德宮, 則仁政門; 昌慶宮, 則明政門; 慶熙宮, 則崇政門。”

157) □銀臺便攷□ 禮房攷 經筵, 兵房攷 次對.

158) □승정원일기□ 정조 7년 6월 6일, 17년 8월 6일.

159) □六典條例□ 吏典 司憲府 詣臺, “三司入侍合啓, 而長官俱入, 則大司憲執笏記奏啓, 而三司諸臣隨而起伏, 【大司憲不備, 則大司諫執笏記; 大司諫不備, 則副提學執笏記; 副提學不備, 則執義執笏記; 執義不備, 則司諫執笏記; 司諫不備, 掌令、持平以次爲之。○ 兩司合啓同, 而玉堂則就坐。】 每啓畢後, 俯伏俟批, 繼陳次啓。【前啓, 則或只舉請字以下, 而未有學末之教, 則必從頭讀奏。○ 長官讀奏啓辭未了而若遞差, 則下臺連其下段畢傳。】”

玉堂은 자신들의 자리로 돌아갔다.<sup>160)</sup> 長官이 입시 전계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遞差된 경우에는 그보다 하위의 대간이 중단된 부분부터 이어서 전계하였다.<sup>161)</sup>

넷째, 입시 전계를 행하는 절차를 살펴보기로 한다. 입시 전계는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대간이 입시하는 것이다. 대간의 입시 여부는 승정원에서 국왕에게 문의한 뒤에 정하였는데, 정조 10년(1786)부터 晝講을 행할 때에는 승정원에서 국왕에게 문의한 뒤에 대간을 입시하도록 하였고, 召對를 행할 때에는 문의하지 않고 곧바로 입시하도록 하였다.<sup>162)</sup> 次對에는 양사의 長官이 참석하였고 朝參에는 공무를 행하는 대간이 모두 참석하였으므로, 이때에는 승정원에서 별도로 문의하는 절차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sup>163)</sup> 두 번째 단계는 傳啓할 때가 되면 입시한 대간이 국왕 앞으로 나아가 계사를 아뢰고 批答을 받는 것이다. 입시 전계는 次對, 經筵, 召對, 朝參 등이 있을 때 대간들이 입시하여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의식이나 행사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국왕이 傳啓하라고 명하면 兩司 또는 三司의 관원이 국왕 앞으로 나아가 엎드려서 아뢰었다.<sup>164)</sup> 이때에는 대표 관원 한 사람이 아뢰고 나머지 동참한 관원은 아뢰는 사안이 바뀔 때마다 대표 관원과 함께 일어났다가 엎드렸다.<sup>165)</sup> 입시 전계를 행할 때에도 대간이 계사의 내용을 모두 읽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국왕의 명에 따라 서두와 말미 부분이나 ‘請’ 자 이하만 읽기도 하였다.<sup>166)</sup> 이는 수많은 대간 계사를 榻前에서 모두 읽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前啓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이 매일 반복되기 때문에 나온 조치라고 하겠다. 입시 전계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1회만 가능하고, 1회 이후에도 추가로 아될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所懷로 아뢰었다.<sup>167)</sup> 대간이 입시하여 전계할 때에는 하나의 사안을 전계할 때마다 그에 대한 국왕의 批答을 받고 나서 그 다음 사안을 전계하였고, 그러기 전에는 다른 계사를 아뢰지 못하였

160) 위와 같음.

161) 위와 같음.

162) □銀臺便攷口刑房攷 臺諫, “詣臺臺諫若值講筵入侍時, 則詣閣外隨入之意, 微稟, 直爲入侍。【晝講, 則微稟隨入, 召對, 則不稟直爲隨入事, 丙午飭教。】”; □승정원일기□ 영조 48년 11월 11일, “臺臣詣臺之後, 入侍承宣卽爲稟白, 待下教入侍, 自是規例。”; □승정원일기□ 정조 10년 4월 25일, “古例, 詣臺臺臣, 晝講, 則書座目入參; 召對, 則微稟以入, 而近來臺臣, 未諳古規, 不爲隨入, 今番則同爲入侍事, 分付。”; □승정원일기□ 현종 12년 11월 26일, “取考政院謄錄, 則丙午受教, 詣臺臺臣, 雖傳啓之後, 晝講入侍, 則微稟隨入, 召對, 則不待微稟, 直爲隨入, 又有近例之載於謄錄者, 講筵入侍外, 不爲隨入矣。”

163) □銀臺便攷口兵房攷 朝參次對; □六典條例口吏典 司憲府 詣臺, “行公臺官待漏詣臺, 次對, 【一司無詣臺之員, 一司雖多員進, 只右位一員入參。】常參, 長官入參; 【長官不備, 臺一員入參。】朝參, 行公諸員入參; 【朝參, 無臺諫則不得爲之, 常參, 則否。】朝講, 長官執冊入參; 【若不備, 則下臺入參, 若無進參之員, 則晝講入參。】晝講及召對時, 詣臺臺臣微稟同入。”

164) □승정원일기□ 정조 6년 12월 16일, 18년 9월 5일.

165) 입시한 신하 중 大臣과 승지는 서서 아뢰고, 그 외의 관원들은 엎드려서 아뢰었다. □승정원일기□ 정조 원년 8월 18일, “大臣、承旨外, 不得起立奏事, 而今日諸臺起立奏事, 未諳體例矣。”; □승정원일기□ 정조 8년 2월 27일, “臺臣之入侍傳啓, 承批更端, 輒爲起伏, 自是筵體, 而掌令安鼎大, 傳啓之際, 一不起伏, 雖因生疎, 不可無警。”; □승정원일기□ 정조 17년 8월 6일, “合啓體段, 凡在隨參者, 同爲起伏, 自是格例, 而長官傳啓之際, 執義許暉、掌令邊景祐、持平朴孝成、校理魚用謙、正言申龜朝·尹益烈竝不起伏, 推考警責何如?”

166) □승정원일기□ 영조 24년 11월 23일, “上曰:‘勿煩。其下啓辭, 從頭盡達, 可也。’”; □승정원일기□ 영조 즉위년 9월 26일, “會又持掌令柳時模避嫌。【措辭見上】處置啓草, 始讀數行, 日暮眼暗, 難於辨字。上曰:‘避辭則不必盡讀, 只讀處置措語, 可也。’”

167) 대간의 所懷는 하루에 동일한 사안에 대해 두 차례 傳啓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따라 傳啓한 내용 이외에 추가로 아될 내용이 있거나 齋戒하는 날처럼 傳啓할 수 없는 날에 아될 내용이 있을 때 국왕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아뢰는 것을 가리킨다. 啓辭는 말단 부분을 ‘請’ 자로 마무리하는데 비해 所懷는 ‘請’ 자를 쓰지 못하고 ‘何如’나 ‘伏願’ 등으로 바꾸어 썼던 것으로 보인다. □승정원일기□ 정조 17년 8월 6일, “啓辭與所懷, 體段自別, 而正言尹益烈, 始以所懷開端, 末以啓辭結語, 揆以臺體, 大違常格, 從重推考何如?”; □승정원일기□ 정조 22년 11월 23일, “臺臣不可一日再啓, 以所懷論則, 可也。既下一請字, 則便是啓也。味例若此, 亦豈臺體!”; □승정원일기□ 순조 원년 2월 23일, “今日卽齋日也, 臺啓當以所懷奏達, 而竝與所懷而不爲仰奏, 事涉味例。”

다.168) 그뿐만 아니라 전계한 사안에 대해 批答을 받지 못하면 물러가지 못하였다.169) 입시 전계를 하다가 시간이 많이 경과한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臺廳에 나가서 傳啓하기도 하였다.170) 세 번째 단계는 입시한 자리에서 물러나와 전계한 계사의 초본을 작성하여 승정원에 전하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대 전계를 행할 때에는 대간 계사의 초본을 대간이 작성하여 승지와 주서에게 전해주면 주서가 정서한 뒤에 승전색을 통해 入啓 하였지만, 입시 전계를 행할 때에는 정본을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먼저 초본으로 傳啓하고 물러 나와서 그날 안으로 대간이 주서에게 초본을 전해주면 주서가 정서하여 入啓 하였다.171) 榻前에서 대간 계사를 서두와 말미 부분이나 ‘請’ 자 이하만 읽었더라도 추후에 초본과 정본을 작성할 때에는 전체 내용을 모두 작성해서 올렸다.172)

다섯째, 입시 전계를 행할 때 각 계사를 전하는 순서를 살펴보기로 한다. 앞에서 예대 전계를 행할 때에 三司의 合啓, 兩司의 合啓, 사헌부의 啓辭, 사간원의 啓辭 순서로 전계하였음을 살펴보았다. 입시 전계를 행할 때에는 이 4가지의 계사를 어떤 순서로 국왕에게 아뢰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승정원일기□ 정조 7년 6월 25일의 常參次對 입시 기사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날 입시한 三司의 관원은 사헌부의 執義 沈基泰, 掌令 李運彬·金宗鐸, 사간원의 大司諫 尹行元, 司諫 洪彦喆, 正言 宋民載·趙弘鎮, 홍문관의 校理 鄭在信, 副校理 林道浩, 修撰 洪文泳·吳泰賢 등이었다. 이날 입시한 자리에서는 맨 먼저 三司의 合啓 3건을 아뢰고, 다음으로 兩司의 合啓 9건을 아뢰고, 다음으로 사헌부의 啓辭 15건을 아뢰고, 다음으로 사간원의 啓辭 16건을 아뢰고, 새로 獻納에 제수된 李魯春에게 속히 올라오라고 下諭할 것을 청하는 계사 1건과 전계를 형식적으로 한다는 정조의 질책에 따라 양사의 대간이 피험하는 계사 1건을 마지막으로 아뢰었다.173) 이렇게 보면 입시 전계는 三司의 合啓, 兩司의 合啓, 사헌부의 啓辭, 사간원의 啓辭 순서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174) 사헌부와 사간원의 계사 안에서도 일정한 순서로 전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승정원일기□ 영조 7년 4월 5일의 大臣과 備局堂上을 引見할 때의 기사를 보면, 掌令 李台徵이 논핵계사를 前啓와 新啓 순서로 먼저 아뢰고, 다음으로 새로 대사헌에 제수된 李緯에게 속히 올라오라고 下諭하기를 청하는 계사를 아뢰고, 다음으로 李台徵 자신의 피험계사를 아뢰고, 다음으로 校理 尹彙貞이 李台徵을 처치하는 계사를 아뢰었다.175) 입시 전계를 행할 때에는 논핵계사, 피험계사, 처치계사를 순서대로 아뢰고 하유계사를 맨 마지막에 아뢰는 것이 원칙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실제 사례에서는 논핵계사를 맨 먼저 아뢰는 것을 제외하고는 서로의 순서가 일정하지는 않았다.176)

168) □승정원일기□ 정조 14년 4월 29일, “三司啓體, 至爲嚴重, 既未承批, 則豈敢繼陳他啓!”

169) □승정원일기□ 경종 2년 4월 18일, “臺啓無發落則不退, 例也. 泰采之啓, 終無發落, 故臺臣不敢退, 可否問明賜發落焉.”

170) 이러한 기사는 특히 정조대 □승정원일기□에 자주 등장한다. □승정원일기□ 정조 원년 9월 11일, “丁尙喆曰: ‘日已向午, 水刺將至失時, 府院啓, 使之臺廳傳啓, 何如?’ 上曰: ‘唯.’”; □승정원일기□ 정조 9년 4월 3일, “上曰: ‘臺臣, 則退出臺廳傳啓可也.’”

171) □승정원일기□ 현종 2년 8월 25일, 정조 1년 8월 14일.

172) □승정원일기□ 영조 39년 1월 9일, 정조 4년 4월 20일.

173) □승정원일기□ 정조 7년 6월 25일.

174) 이러한 사실은 □승정원일기□ 영조 49년 7월 12일과 정조 7년 4월 18일의 입시 기사를 비롯한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재차 확인할 수 있다. □영조실록□ 24년 5월 28일(신해), “凡傳啓之規, 若有合啓, 則先發合啓而後發府、院之啓, 而霏佯爲失措, 先發府啓, 允濟又畢院啓, 循例承批, 三司合啓, 竟不連啓.”

175) □승정원일기□ 영조 7년 4월 5일.

176) □승정원일기□ 현종 10년 1월 12일과 영조 5년 2월 20일의 입시 기사를 보면 처치계사를 먼저 아뢰고 하유계사를 나중에 아뢰었는데, □승정원일기□ 영조 즉위년 11월 12일과 5년 10월 1일의 입시 기사를 보면 하

여섯째, 입시 전계를 행할 때 전계하는 방식을 살펴보기로 한다. 예대 전계를 행할 때에는 계사의 초본을 가지고서 전계하였으나, 입시 전계를 행할 때에는 대간 계사를 笏記에 적어서 이를 보고 아뢰었다.<sup>177)</sup> 그러나 실제 입시 전계를 행할 때에는 笏記를 그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글과 말을 섞어서 아뢰었던 것으로 보인다.<sup>178)</sup> 대간 계사를 笏記에 작성하여 아뢰도록 한 것은 長文의 계사를 모두 외워서 아뢰 수가 없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대간이 笏記를 보고서 아뢰더라도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다. 즉 대간이 전계할 때 홀기를 노출시키거나 펴놓고 읽는 것은 물론이고 홀기를 서로 주고받는 행위도 금지하였다.<sup>179)</sup> 대간이 홀기에 마음대로 내용을 추가하는 것도 금지하였으며, 대간이 입시 전계를 하던 도중 피험할 것에 대비하여 피험계사와 그에 대한 처치계사를 미리 홀기에 작성해서 가지고 입시하는 것도 금지하였다.<sup>180)</sup> 입시 전계는 국왕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보니 형식과 절차가 엄중하여, 정해진 규정이나 관례를 어길 경우에는 이처럼 질책이나 처벌을 받았던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간은 매일 계사를 국왕에게 올릴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는데, 그럴 때에는 그 사유에 따라 조보에 반포하는 내용도 달라졌다. 즉 양사의 대간이 아예 臺廳에 나아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상소가 없다.[無城上所]’라고 써서 반포하였고 대청에 나아오기는 하였으나 계사를 올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사가 없다.[無啓辭]’라고 써서 반포하였으며, 양사의 대간이 입시해서 전계해야 하는데 입시할 대간이 없었을 경우에는 ‘입시한 대간이 없다.[無入侍]’라고 써서 반포하였고 입시하기는 하였으나 계사를 아뢰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사가 없다.[無啓辭]’라고 써서 반포하였다.<sup>181)</sup>

## V. 맺음말

臺諫 啓辭는 兩司의 臺諫이 국왕에게 올리는 啓辭를 가리킨다. 양사에서는 매일 국왕에게 啓辭를 올리도록 의무화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양사의 대간은 매일 臺廳에 나와서 계사

유계사를 먼저 아뢰고 처치계사를 나중에 아뢰었다.

177) □승정원일기□ 영조 1년 1월 13일, “今日則臺啓, 仍不意入侍, 以傳啓本草進讀, 而此非臺規也。古者入侍時, 必有笏記, 此後則勿復如是之意, 分付何如?”; □승정원일기□ 영조 10년 3월 1일, “臺諫啓辭, 則有小紙笏記之事, 而玉堂文義, 則無笏記之例。”; □승정원일기□ 영조 15년 11월 26일, “啓裕持笏記進伏。上曰:‘無改處, 則只擧下端, 可也。’啓裕曰:‘請逆坦孳籒, 一依王府草記, 卽令舉行。’”

178) □승정원일기□ 순조 원년 1월 6일, “臺啓之或文或語, 參互奏達, 自是格例, 而掌令李安默, 傳啓之際, 一直以文仰奏, 事體所在, 誠極未安。”

179) □六典條例□ 吏典 承政院 登筵, “臺諫奏啓辭時, 若露出笏記, 則請推。”; □승정원일기□ 영조 24년 11월 23일, “臺啓笏記, 乃私自補忘之具, 榻前連啓之際, 不敢偃然展視者, 卽古規也。”; □승정원일기□ 정조 즉위년 4월 10일, “自前臺諫傳啓之際, 笏記隱於袖裏以奏, 而大司憲朴相德露出笏記, 有違格例, 推考何如?”; □승정원일기□ 정조 16년 12월 19일, “憲臺退出之時, 笏記之私相傳受, 極爲未安。”

180) □승정원일기□ 영조 10년 2월 20일, “臺啓事體至重矣。掌令閔瑗, 入侍後引避, 而獻納趙漢緯, 自外預書其避嫌及處置措語於笏記而傳啓, 殊失臺體, 請獻納趙漢緯遞差。”; □승정원일기□ 정조 원년 7월 11일, “伊時臺臣, 潛自添書於笏記, 臺啓謄傳, 事體至重, 雖有添刪者, 必待簡通, 謹悉而爲之, 則名以臺諫, 任自添書, 事未前聞, 有關後弊。”

181) □승정원일기□ 영조 39년 9월 25일, “適見宣廟朝邸報謄本冊子, 則兩司無啓之日, 以無啓辭書出, 臺諫去就之不可闕略, 果如是矣。自今以後, 兩司初不詣臺, 則以無城上所書出; 詣臺而無所啓, 則以無啓辭書出; 朝參次對等法典應入侍之時, 無入侍之員, 則無入侍書出; 無所啓, 則亦以無啓辭書出。”

를 전하거나 입시하여 榻前에서 계사를 전하였다. 전자를 詣臺 傳啓 또는 臺廳 傳啓라고 하였고, 후자를 入侍 傳啓 또는 榻前 傳啓라고 하였다. 대간이 臺廳에 나아가 傳啓할 때에는 啓辭의 草本을 작성하여 승지와 주서에게 전해주면 주서가 정서한 뒤에 승전색을 통해 入啓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대간이 榻前에 입시하여 傳啓할 때에는 계사의 내용을 笏記에 작성하여 아뢰고, 어전에서 물러나와 啓辭의 草本을 작성하여 승지와 주서에게 전해주면 주서가 정서한 뒤에 승전색을 통해 入啓하였다. 대간 계사는 그 내용에 따라 論劾啓辭, 避嫌啓辭, 處置啓辭, 下諭啓辭로 나눌 수가 있다. 논핵계사는 대간이 국왕의 시책에 대해 諫諍하거나 관원의 처신에 대해 彈劾하는 내용의 계사를 가리킨다. 피혐계사는 대간이 다른 관원의 탄핵을 받거나 국왕의 질책을 받았을 경우에 대간의 직무를 맡을 수 없다며 遞差해주시기를 청하는 내용으로 올리는 계사를 가리킨다. 처치계사는 피혐한 대간에 대해 정당성 여부를 판정하여 出仕하도록 청하거나 遞差하도록 청하는 내용으로 올리는 계사를 가리킨다. 하유계사는 지방에 있는 대간에게 속히 올라오도록 下諭할 것을 청하는 啓辭를 가리킨다.

이상 본론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아래에 제시한 표와 같다.

<표-2> 본론의 요약

대간 계사의 작성	초본	<그림-1> : □승정원일기□ 고종 8년 12월 25일 작성 주체 : 대간(城上所) 작성 장소 : 臺廳 작성 시기 : 申時 이전(獨啓)/三更 이전(合啓) 작성 과정 : 발의→初草本 작성→대간 합의→正草本 작성 전달 방식 : 城上所(臺廳)→승지와 주서
	정본	<그림-6> : □승정원일기□ 정조 23년 8월 24일 작성 주체 : 주서/대간/승지 작성 장소 : 承政院/臺廳 작성 시기 : 申時 이전(獨啓)/三更 이전(合啓) 작성 과정 : 草本 수령→正本 작성 전달 방식 : 승지/대간→승전색
대간 계사의 분류	논핵계사	<그림-7> : □승정원일기□ 숙종 13년 4월 16일 논핵 방식 : 獨啓/合啓 논핵 절차 : 發啓(新啓)→連啓(前啓·舊啓)→停啓 비답 유형 : 依啓/不允(新啓)/勿煩(前啓)
	피혐계사	<그림-8> : □승정원일기□ 정조 23년 8월 24일 피혐 방식 : 단독 피혐/연명 피혐 피혐 절차 : 臺廳에서 초본 제출(詣臺傳啓)/즉시 피혐후 초본 제출(入侍傳啓) 비답 유형 : 勿辭亦勿退待/勿辭退待物論/勿辭/依啓
	처치계사	<그림-9> : □승정원일기□ 숙종 11년 8월 5·6일 처치 방식 : 兩司 각각 처치/兩司 상호 처치/홍문관 처치 처치 절차 : 동료와 상의→처치계사 작성 처치 유형 : 出仕 요청/遞差 요청
	하유계사	<그림-10> : □승정원일기□ 정조 23년 8월 9일 하유 절차 : 대간 하유계사 작성 및 전달→국왕 윤허→승정원 有旨 작성 및 전달
대간 계사의 전달	예대전계	시기 : 매일 未時나 申時(獨啓)/매일 三更(合啓) 장소 : 臺廳 주체 : 兩司의 城上所 절차 : 대간 계사의 초본 전달→주서 정본 작성→승전색 入啓 순서 : 三司 合啓→兩司 合啓→사헌부 계사→사간원 계사 비답 : 승지와 주서가 臺廳에 나가서 전달
	입시전계	시기 : 次對/經筵/召對/朝參 등이 있을 때 장소 : 次對·經筵·召對·朝參 등이 열리는 곳의 榻前 주체 : 兩司의 長官



		절차 : 대간 입시→榻前에서 傳啓→초본 전달→정본 작성→승전색 入啓 순서 : 三司 合啓→兩司 合啓→사헌부 계사→사간원 계사 비답 : 대간이 입시한 자리에서 직접 수령
--	--	--

마지막으로 대간 계사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간 계사는 草本과 正本을 작성하였다는 점이다. 초본은 대간이 작성하고 정본은 주서가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대간 계사의 내용이 승지와 관련이 있어서 승지가 모두 臺廳에 나아올 수 없는 상황일 때에는 대간이 정본을 직접 작성하기도 하였다. 이는 각 관사에서 문서를 바칠 때에 정본을 직접 작성해서 바치는 것과는 다른 것으로, 대간에 대한 예우라고 할 수 있겠다.<sup>182)</sup>

둘째, 대간 계사는 獨啓와 合啓로 올릴 수 있었다는 점이다. 獨啓에는 사헌부의 계사와 사간원의 계사가 있고, 合啓에는 양사의 合啓와 삼사의 합계가 있었다. 양사가 각각 獨啓를 올리는 것 이외에도 兩司나 三司가 合啓를 올릴 수 있도록 한 것은 獨啓에 비해 다수의 여론을 국왕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183)</sup>

셋째, 대간 계사에는 新啓와 前啓가 있다는 점이다. 前啓는 예전에 아뢴 내용을 반복해서 아뢰는 것이기 때문에 ‘故紙를 베껴서 전하는 것’이라는 다소 자조적인 표현을 하기도 하였으나, 대간 계사가 公論을 전달하는 수단이고 보면 公論이 수용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대간의 책무로 인식되었다.

넷째, 대간 계사는 連啓할 수도 있고 停啓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대간 계사 중 논핵계사는 發啓한 이후로 국왕이 수용하지 않으면 그 사안에 대해 계속해서 傳啓할 것인지 아니면 傳啓를 중지할 것인지를 정해야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은 대간들의 합의가 바탕이 되어야 하였다. 이처럼 대간들의 합의에 의해서 連啓할지 停啓할지를 정하되 국왕의 간섭을 배제한 것도 대간 계사의 특징 중 하나라고 하겠다.<sup>184)</sup>

다섯째, 대간 계사에는 劾議계사와 處置계사가 있다는 점이다. 다른 관원의 탄핵을 받거나 국왕의 질책을 받은 관원이 上疏나 劄子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기도 하고 상대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간의 경우에는 그러한 방법 이외에도 劾議계사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거나 상대의 주장을 반박하고 그에 대해 동료 대간이나 옥당의 처치를 받는 것은 대간만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섯째, 대간 계사는 臺廳에서 傳啓하기도 하고 榻前에서 傳啓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대간이 매일 臺廳에 나아가서 傳啓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대간에게 言官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요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經筵이나 次對 등의 행사가 있을 때에는 대간도 입시하여 국왕 앞에서 傳啓하도록 한 것은 국왕이 公論을 직접 청취하고 諫言을 수용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대간 계사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대간 계사는 대간이 여론을 국왕에게 전달하는 수단이자 국왕이 여론을 청취하는 수단이었다. 그러나 대간 계사에 대한 국왕의 반응은 다

182) 대간 계사 이외에 藥房 啓辭와 賓廳 啓辭 등도 주서가 정본을 작성하였다. 필자, 앞의 논문 149, 152쪽 참조.

183) 대간 계사 이외에 여러 관사의 관원이 합동으로 올리는 계사로는 庭請 啓辭와 賓廳 啓辭가 있다. 필자, 앞의 논문 148~150쪽 참조.

184) □승정원일기□ 정조 9년 2월 19일, “至於臺閣啓辭, 雖隻字片言, 人主不得低昂於其間者, 自是重體例嚴公議之道。而前後筵席, 屢勤提飭, 特以拿之一字, 改措語從施, 末乃以發配酌處, 臣固仰殿下好生之德如春發育, 而所不可私者, 法也, 必不可貸者, 刑也, 以殿下明聖之德, 執此金石之刑與法, 而何乃作此過中之舉也!”; □승정원일기□ 정조 18년 4월 28일, “三司合啓, 雖以人主之尊, 決不可與奪, 則先收禁令, 俾伸公議。”

양하였다. 비답을 지연시키기도 하고 심지어 계사를 불에 태우기도 하는 등 言路를 막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sup>185)</sup> 반면에 매일 傳啓하지 않는 대간을 질책하거나 하루에 여러 가지 사안을 傳啓한 대간에게 시상하는 등 여론을 수용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기도 하였다.<sup>186)</sup> 본고에서는 다루지 못했으나, 국왕은 정치적 목적에 따라 대간 계사를 어떻게 이용하였는지, 또 대간과 다른 신하들은 자신들이 속한 당파적 입장에 따라 대간 계사를 어떻게 이용하였는지를 연구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

185) □승정원일기□ 현종 2년 5월 21일, “且光海時, 有一迂怪之人, 以爲凡事遷退, 則國祚漸延。光海信聽此說, 凡公事, 每以退行爲能, 至於臺諫啓辭, 答以徐當發落四字。雖有被論之人, 遞罷無期, 故甚至守令被彈者, 則滿其瓜期於徐當發落之中。”; □승정원일기□ 정조 18년 4월 28일, “近來所謂臺啓, 都是眉睫間覬覦, 未見其眞箇誠意。況其所燒者, 非啓辭而卽啓草也。”

186) □승정원일기□ 정조 3년 1월 16일, “初入臺地, 一日陳十七啓, 語皆慷慨切實, 君德時政, 無不及之, 予甚嘉之。其在獎直來諫之道, 合有褒賞之典。司諫院正言柳孟養, 特賜中鹿皮一令, 使之帳前親受。”; □승정원일기□ 정조 21년 6월 16일, “自今以後, 諫長以下諸臺逐日入來傳啓之意, 使諫長知之。”

## 참고문헌

### 자료

- 崔恒 등, □經國大典□,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97.  
金在魯 등, □續大典□,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98.  
金致仁 등, □大典通編□,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98.  
趙斗淳 등, □大典會通□,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99.  
具允明, □典律通補□,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98.  
承政院, □銀臺便攷□,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0.  
承政院, □銀臺條例□,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0.  
趙斗淳 등, □大典條例□,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99.  
李魯春 등, □弘文館志□,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2.  
徐命膺 등, □奎章閣志□,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2.  
承政院, □政院故事□,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未詳, □景福宮誌□ :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柳壽垣, □迂書□, 서울대학교 고전간행회, 1971.  
柳馨遠, □磻溪隨錄□, 동국문화사, 1958.  
李瀼, □星湖全集□,(□韓國文集叢刊□ 제198~200권) 한국고전번역원, 1997.

### 논저

- 노인환, 「조선시대 諭書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09.  
명경일, 「정조대 傳教軸을 통해 본 □承政院日記□의 문서 騰錄 체계」, □고문서연구□ 제44호, 한국고문서학회, 2014.  
목정균, □朝鮮前期 制度言論研究□,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5.  
송웅섭, 「성종대 대간피험(臺諫避嫌)의 증가와 그 의미」, □조선시대사학보□ 62권, 조선시대사학회, 2012.  
이강욱, 「啓辭에 대한 考察-□承政院日記□를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제37호, 한국고문서학회, 2010.  
정두희, □朝鮮時代 臺諫研究□, 일조각, 1994.  
조미은, 「朝鮮時代 王世子文書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4.  
최승희, □朝鮮初期 言官.言論研究□,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 전자자료

- 朝鮮王朝實錄□ :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 국사편찬위원회(<http://sillok.history.go.kr>).  
□承政院日記□ :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 국사편찬위원회(<http://sjw.history.go.kr>).  
□日省錄□ :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  
□傳教軸□ : 한국학자료센터 영남권역센터(<http://yn.ugyo.net>).

## Abstract

### A Study on Daegan Gyesa

Lee, Kang-uk

Daegan gyesa refer to gyesa to be submitted to a sovereign from Saheonbu and Saganwon. Daegan gyesa is recorded in 『SeungJeongWonIlGi』 almost everyday. Daegan gyesa remaining in the document is a part of the drafts and the original copy. In this study, focused on Daegan gyesa remaining in the document and Daegan gyesa recorded in 『SeungJeongWonIlGi』 were looked into by writing, classification and delivery of gyesa.

Daegan gyesa was submitted to a sovereign that writing the drafts and then writing the original copy based on the drafts. The drafts of Daegan gyesa was written by Seongsangso who take charge of incomings and outgoing document from Daegan. Seongsanso wrote the first drafts in advance and came to terms with the colleague Daegan. Then Seongsanso wrote the final drafts. Seongsanso delivered completed the drafts of Daegan gyesa to Seungji and Joseo asking to come to Daechung.

Joseo who delivered the drafts from Daegan wrote the original copy of Daegan gyesa at Seungjeongwon. If Seungji couldn't go out to Daechung because the contents of Gyesa were related to Seungji, only Joseo went out to Daechung, Daegan wrote the drafts in person and delivered to Seungjeonsaek. Except for that, in the case of the joint gyesa of Yangsa and Samsa, Joseo wrote the original copy at Daechung and Seungji wrote Bokhab gyesa of Samsa. When the original copy of Daegan gyesa was written, gyesa of Saheonbu and Saganwon were submitted by Sinsi and the joint gyesa of Yangsa and Samsa were submitted by 3Kyung through Seungjeonsaek.

Daegan gyesa can be classified as Nonhack gyesa, Pihyeom gyesa, Chuchi gyesa, Hayu gyesa according to contents. Nonhack gyesa refer to Gyesa that Daegan remonstrate a sovereign's policy or impeach government official's behavior. Nonhack gyesa can be classified as the solo gyesa by Saheonbu or Saganwon, the joint gyesa by Yangsa or Samsa, the gyesa of fresh issue, the previous gyesa and the former gyesa. At the start of the submitting Gyesa, serve notice on colleague Daegan and ask for assent. After consultation and went into delivering gyesa. If once proposed Nonhack gyesa couldn't get a sovereign's permission, decide to whether continue submitting gyesa or quit submitting gyesa by Daegan's consent.

Pihyeom gyesa means a request to replace a public official someone who isn't eligible for Daegan because he was impeached by another government official or was reproved by a sovereign. If Daegan has a reason of Pihyeom, he submits Pihyeom gyesa and then be judged if he can do the duty of Daegan or not by public opinion.

Chuchi gyesa means a gyesa which determines justification about impeached Daegan and requests attendance or replaces a public official. Chuchi was taken by Daegan or Oakdang who normally exercise a public function based on Pihyeom gyesa of Daegan. Chuchi gyesa which requests entering government service about impeached Daegan submitted and got a sovereign's permission, Seungjeongwon called relevant impeached Daegan. And then Seungji went to Daechung and informed relevant Daegan of returning to work.

Hayu gyesa means a gyesa which order a local Daegan to come up quickly. When ordering Daegan who was in local part for being appointed, vacation or following the royal command to come up quickly, Yangsa submitted gyesa and got a sovereign's permission. At this time, Seungjeongwon wrote and sent Yooji to Daegan at local.

Yangsa were in duty to delivering gyesa everyday, the way of delivering gyesa can be classified 'the going out to Daechung and delivering gyesa' and 'the having an audience and delivering gyesa'. 'The going out to Daechung and delivering gyesa' means Daegan of Yangsa going to Daechung and delivering Daegan gyesa to Seungji and Joseo for submitting to a sovereign. It was also called the Daechung delivering gyesa. 'The going out to Daechung and delivering gyesa' was conducted everyday when state affairs normally performing except for do not conducting state affairs period such as a sovereign's purification or royal mourning duration. When Daegan ought to having an audience, he had an audience and did delivering gyesa.

'The having an audience and delivering gyesa' means reading Daegan gyesa to a sovereign in royal presence in person when a sovereign and subjects get together and Daegan have an audience as well. It was also called the Royal presence delivering gyesa. They did the having an audience and delivering gyesa when Chadae that a sovereign receive Daeshin and Bibyunsa Dangsang, a sovereign and subjects come together and preach scriptures and the royal lecture and Sodae. Also, when they hold Jocham that a liege subject do the 4times salutations at the entrance of Jungjeon or a sovereign make an order, Daegan did the having an audience and delivering gyesa. During did the having an audience and delivering gyesa, subjects reported Daegan gyesa after writing it to Holgi, but they were banned from exposing, reading with opening and even exchanging Holgi.

Keyword : Nonhack gyesa(論劾啓辭), Pihyeom gyesa(避嫌啓辭), Chuchi gyesa(處置啓辭), Hayu gyesa(下諭啓辭), going out to Daechung and delivering gyesa(詣臺傳啓), having an audience and delivering gyesa(入侍傳啓)